

발간등록번호
서울교육 2023-106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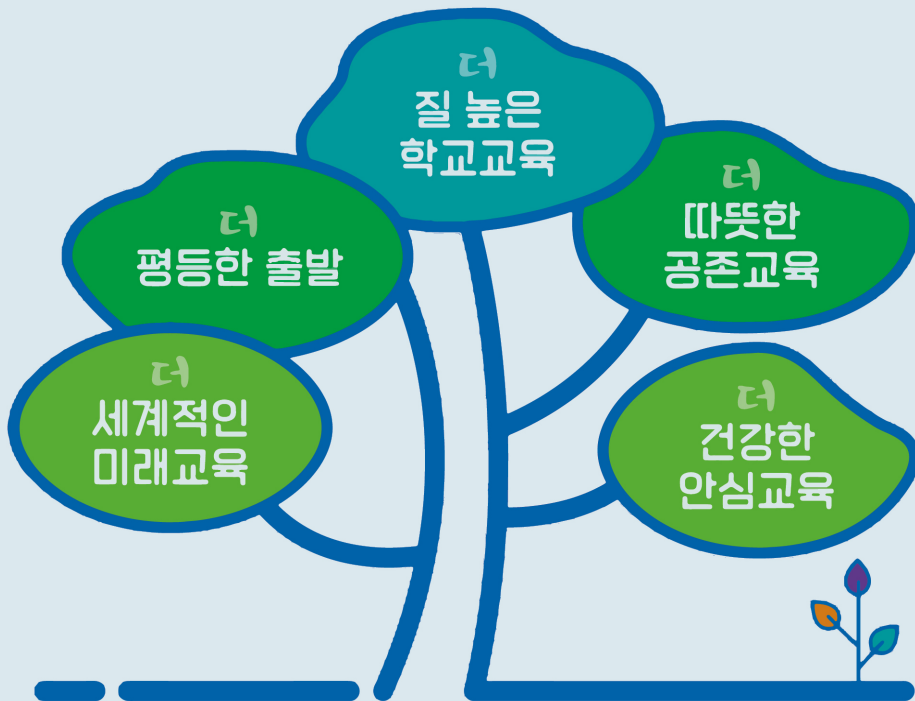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교육 지표

생각이 자라는 교실
함께 성장하는 학교
미래를 여는 교육

정책 방향



차례

CONTENTS

I 2024년도 서울교육 예산편성 기본방향

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개요	3
2. 지방교육재정 운용 여건	6
3.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	8
4. 서울교육 예산편성 기본방향	15

II 2024년도 서울교육 예산편성 기본지침

1. 예산편성 기본 원칙	19
2. 예산편성 세부 기준	22
3. 목(그룹)별 편성 요령	35
4. 투자사업비 편성기준	58
5. 건전재정 운영 지침	60
6. 세출예산 운용기준	62
7. 교육부 협조 요청사항	64
[참고]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중점사항	66



III 예산편성 기준경비

1.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	71
2. 교육부 훈령 등에 의한 기준경비	72
3.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 기준경비	77

★ 부 록

1.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89
2.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93
[별표 1] 업무추진비 예산편성기준 (제3조 관련)	95
[별표 2]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제4조 관련)	99
[별표 3]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제5조제1항 관련)	108
[별표 4]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제5조제2항 관련)	126
[별표 5] 세입·세출예산의 편제 (제6조 관련)	150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I

2024년도 서울교육 예산편성 기본방향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개요¹⁾



가 예산의 개념



□ 1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

- 교육비특별회계의 1회계연도 동안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
 - ※ 교육비특별회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회계
- 시·도교육감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소요재원을 확보하고 수입·지출내역과 규모를 금전적 수치로 나타내어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확정

나 예산의 근거



□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45조(추가경정예산)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제36조(예산의 편성),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1)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교육부) p.295

다 예산의 분류



□ 본예산

- 지방자치단체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50일전인 11월 1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지방의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의결하여 성립된 예산을 말함(「지방자치법」 제142조)

□ 수정예산

-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이미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기제출한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본래의 예산 가운데 일부가 수정된 것을 수정예산이라 함(「지방자치법」 제142조)

□ 성립 전 사용예산

-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성립전 예산임을 명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를 말함(「지방재정법」 제45조)

□ 추가경정예산

-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함(「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각각 별개로 성립되나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일단 성립되면 본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



라 예산편성 절차



- | | | |
|---|--------|--|
| ① | 교육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편성 기준 수립 및 시·도교육청 통보(8월) |
| ② | 시·도교육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안 편성(9~10월) |
| ③ | 시·도교육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11. 1.까지) |
| ④ | 지방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안 심의·의결(12.16.까지) 및 이송(의결 후 3일 이내) |
| ⑤ | 시·도교육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 보고 및 고시(지방의회로부터 이송 받은 이후 지체없이) |

2.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 운용 여건²⁾



□ 세입 여건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는 등 '22년 세입 여건은 양호하였으나 '23년 이후 대외 여건 악화 등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세입 여건 불안정성 우려

- **(이전수입)**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국세수입은 지속 증가 전망이긴 하나, 2023년 상반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국세 규모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의 감소 우려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안) 국세수입 전망('23.8월 발표) 〉

※ (국세수입 전망액, 조원) '23년 400.5 → '24년 367.4 → '25년 401.3 → '26년 423.2 → '27년 444.9

* '23년 6월말 기준, 국세수입 누계는 전년동기 대비 △39.7조원

- **(자체수입)** '21년 고교무상교육 완성으로 인해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자체수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미할 전망
- **(지방채)** 그간 세입 여건 양호에 따른 기금 적립액 등을 감안하면 지방채는 미발행이 예상되나 일시적인 세수 여건 악화로 자금 조달을 위한 일시 차입 가능성도 상존
- **(순세계잉여금)** '22년 추경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사업 재조정 등 재정 효율화 노력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

2)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교육부) p.3



□ 세출 여건

교직원 처우개선, 공공요금을 포함한 물가상승 등으로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경상지출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개혁 과제 추진을 위한 지출도 증가 전망

- (인건비) 호봉승급, 처우개선 등으로 소폭 증가 전망
- (물건비) 전기료 인상 등 공공요금 증가를 포함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기본경비 증가와 복리후생비 소요 등으로 소폭 증가 전망
- (이전지출) 원아 수 감소에 따라 자치단체 보육료보조의 감소 요인은 있으나, 기타 이전지출 수요로 전년 수준 유지 전망
- (자본지출) 내진보강·석면제거, 급식실 안전 확보 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학교시설 복합화 등 교육환경개선 추진으로 증가 전망
- (상환지출) 지방채는 전액 상환하였으나 그린스마트스쿨 BTL 임대료 지출에 따라 소폭 증가 전망
- (전출금 등) 늘봄학교 확대, 디지털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교육소외계층 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 등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비 지출 증가 전망
- (예비비 및 기타) 재난 대비 예비비 편성 등으로 전년 수준 유지 전망
- (내부거래) 재정 운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안정화기금 적립 및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설치 등 기금 전출금 확대에 따라 크게 증가한 내부거래가 향후 유지될 전망

3.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³⁾

가 기본방향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담대한 교육개혁 추진

기본
방향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통한 개별 맞춤형 교육
-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 자유·창의에 기반하여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재원
운용
방향

①

학생
맞춤
교육

- ① AI 에듀테크 기반 학생별 맞춤 교육 지원
- ②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 혁신 및 교육역량 제고
- ③ 모든 학생의 사회 정서적 역량 지원

②

국가
책임
교육

- ① 늘봄학교 추진 확대 및 유보통합 추진 기반 마련
- ② 맞춤형 학력진단으로 기초학력 책임 교육 지원
- ③ 소외계층 교육지원 강화

③

교육
기반
조성

- ①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 ② 공교육의 다양성 확대 지원
- ③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시설환경 개선
- ④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확충

재정
운용
전략

- 교육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 재정운용의 책무성 및 계획성 제고
-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과목 등 개편

3)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교육부) p.5



나 재정 운용 방향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통한 개별 맞춤형 교육

- AI 에듀테크 기반 학생별 맞춤 교육 지원
 -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분석한 학습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학생의 수준과 이해도에 맞는 맞춤 교육 제공('25.~)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전 다양한 에듀테크를 정규 수업, 늘봄학교, 방과후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확산
 - ※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규모: ('23) 351교 → ('24) 1,000교 내외
 - 디지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보조교사 배치 확대 ('23. 340명 → '24. 680명 → '27. 1,800명)
-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 혁신 및 교육역량 제고
 - 학생의 창의력·문제해결력 함양을 위해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산하고 학생 성장과정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 추진
 - *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 토와토론 수업 등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탐구하는 학습자 중심 수업으로 학교급별 교과별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활용(KICE, '20)
 - 챗GPT 시대 교원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AI·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참여형 수업·평가 역량 강화 연수
 - 학생의 자발적인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학교수업 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선도학교를 공모하여 우수사례 확산
- 모든 학생의 사회·정서적 역량 지원
 - 학생의 학교적응, 심리정서, 공동체 의식 등에 대한 사회·정서지표* 조사로 학교교육을 통한 학생의 성장 정도 측정
 - * 학업 적응, 친구와의 관계, 학교생활, 사회성, 소속감, 자기이해, 안전 등
 -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심리안정, 회복적 생활교육 등)을 개발·보급하여 학교의 활용 지원
 - 디지털 시대 필요한 윤리 교육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인성교육 강화

□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 늘봄학교 확충 및 유보통합 추진 기반 마련
 -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늘봄학교 추진('23.5월~) 및 확산('24.~)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하고, 교부금 등을 활용해 교육의 질 제고

※ 관계부처 합동 '유보통합추진단' 및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설치('23.1월)

로드맵	1단계('23~'24) : 격차해소, 기반마련	→	2단계('25~) : 통합 본격 시행
학부모	단계적 교육·돌봄 부담 완화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교사	처우 개선, 자격·양성 체제 개선방안 마련		개편된 자격·양성과정 적용
시설	안전한 환경 조성		시설 기준 개선안 적용
	↑		↑
조직	교육 중심의 중앙·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일원화된 관리체제로 지원
재정	재원(유특회계·국고·지방비) 통합		통합된 재원으로 운용
법령	관련 법률 일괄 제개정('24)		제·개정 법률 시행

- 맞춤형 학력진단으로 기초학력 책임 교육 지원
 - 학생들의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 3, 중 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집중 지원*
 - * 언어(literacy), 수리(numeracy), 디지털 소양 등 3대 핵심 소양 집중교육
 - 초3·중1 외 학년에서도 성취 수준에 기반한 개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학업성취수준 진단·환류 체계 강화

-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를 전년 대비 평균 23.3% 대폭 인상하고, 교육활동에 소비하도록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 지급으로 개편('23.3월)
 - ※ 교육급여('22 → '23, 만원) : (초) 33.1 → 41.5 (중) 46.6 → 58.9 (고) 55.4 → 65.4
 - 복지, 학업, 정서, 다문화·특수교육 및 안전(학교폭력, 성폭력, 학대 등)에 있어 사전예방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전주기 통합 서비스*로 재구조화('23.3월~)

* [예] 학생맞춤통합지원 :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맞춤형 원스톱 지원·사례관리(접수·신청→진단→지원→성장관리) 체계



□ 자유창의에 기반하여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 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학생이 진로·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점제 운영 개선
 - ※ 진로학업설계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교원 진로학업설계 지도 역량 제고 연수 등 지원
 - 공통 점검기준 마련, '학교 자체-교육청-외부 점검단'의 3단계 점검, 평가 관리센터 설치·운영 추진
 - 전 과목을 대상으로 이수기준* 적용, 이수기준 미도달 우려 학생은 예방지도, 미도달 학생은 보충지도·대체이수 실시
 - * 학업성취율 40% + 과목 출석률 2/3 이상(교양 교과외의 경우 출석률 기준만 적용)
- 공교육의 다양성 확대 지원
 - '25년 일반고 전환 예정인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여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 제공
 - 미래 유망 성장 산업 등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한 전문 직업 인재 집중 육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2.0' 추진
 -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 집중교육을 확대하고, 학생 개개인의 한국어 수준별 맞춤형 교재 개발·보급
-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환경시설 개선
 -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추진해 생활 속 위험과 안전사고를 예측·분석하고 판단·해결하는 위기대응능력 증진
 - ※ 사도 1개소 이상 안전체험관 확충('23~'26, 6개소 신규 구축), 전문인력 지원 등
 -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확대*하여 안전취약요소 선제적 발굴·개선
 - * ('22) 2,000개교 → ('23) 3,000개교 → ('24) 5,000개교 → ('25) 6,199개교
 - 내진보강·석면제거* 및 학교 급식실 안전 확보 등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속 추진
 - * 완성연도: 내진보강('29), 석면제거('27)
-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확충
 -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초·중고, 대학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 * [예] 학교에 문화·체육·복지 등(예: 돌봄시설, 도서관, 체육관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주중 일과시간은 학생 중심 이용, 주중 일과 외 시간 및 주말은 주민과 공동 활용
- ※ 5년간(2023~2027)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 공모선정 및 행정정적 지원
- 늘봄학교(교육부), 도시재생사업(국토부), 공공기관 이전(균형위) 등 중앙·지역, 부처간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학교시설 활용방안 모색

다 재정 운용 전략



□ 교육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 교육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활성화 지원 강화
 - 예산편성-집행-결산-분석 등 재정운용 과정 전반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영향 및 효과를 고려
 - 모든 학생이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정투자를 확대하여 교육기회 확충 및 사회통합에 기여
 - 안전·사회통합·일자리 등 교육과 밀접한 사회적 가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 다양한 교육 사업 발굴
 - 지역발전전략에 따른 지역대학·지자체·교육청 간 공동사업을 발굴·확대하여 지역맞춤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
 - ※ 법령 또는 조례 외에 자치단체 협약 등에 따라서도 자치단체 상호간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부담금(330-07) 원가통계목 설명 정비
-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등을 위해 학교시설 복합화 등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며 상생할 수 있는 장소로 구성
 - 폐교재산 활용 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지역주민 의견 반영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입 확대 유도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매 목표비율 준수 및 중소기업·여성·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비율 분석, 환류로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입 확대 유도



- 시·도교육청 금고 지정 시 사회적 가치 고려
 - 해당 지역에 대한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및 주민의견 수렴 결과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금고 지정

□ 재정운영의 책무성 및 계획성 제고

- 예산편성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 모든 재량지출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 또는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자율적 구조조정 추진
 - * 신규사업은 자율적 구조조정 속에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교육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 선심성 현금지원에 대해서는 재정 운용 단계별로 관리하는 등 선심성 투자 지양
 - ※ 「사회보장기본법」 및 시행령,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절차를 미이행한 경우 예산 편성 불가
- 시도교육청별 주요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범 실시
 - 「지방재정법」에 따라, '23년 주요 재정사업(총 사업비 5억원 이상 투자사업 및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자율평가('24.~) 및 차기 예산안 반영('25.~)
-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 추진
 -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 사업 등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의 내실화로 계획적인 재정 운용
 - 시·도교육청의 비전과 주요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 교육청별 중장기·대규모 재원 투입이 필요한 사업 수요에 대해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관리
- 국정과제(☐, ☒, ☓) 및 교육분야 국가시책사업 우선 투자
 -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국정과제 이행 및 국가시책사업 우선 투자

- 적극적 본예산 편성 및 이·불용액 최소화
 -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치로 반영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해 잉여금, 불용액 등 발생 최소화 (낙찰차액을 여유재원으로 활용하여 추경 시 사업 편성 등)

□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과목 등 개편

-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기존 사회보장성 수혜금과 중복 우려가 있는 교육청의 각종 현금성 복지사업비를 관리하여 건전 재정 운용
 - ‘자체사회보장적수혜금’ 세목을 신설하여, 관련 예산 편성·집행 현황 모니터링 및 적정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재정 건전성 제고, 집행의 책무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과목 체계 등 개편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및 특정업무경비 집행 설명을 추가하여 예산집행의 책무성 및 효율성 제고
 -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교육의 변화 및 근거 법령을 반영하여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정비
 - 변화된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등), 자체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무요원보상금, 기타보조금 4개 세목을 변경·신설하고, 원가목 및 설명 변경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정비
- * 민간경상보조·민간자본보조 세목의 원가목 분리 신설, 법령 또는 조례 외에 자치단체 협약 등에 따라서도 자치단체 상호간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부담금 원가목 설명 정비 등



4. 2024년도 서울교육 예산편성 기본 방향



재정 운용 목표

- ❖ 교육감 제3기 공약사업 및 국정 과제의 지속 추진 지원
- ❖ 기초학력 집중 지원, 미래교육기반 구축 등 공교육의 질 제고
- ❖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서울교육의 사회적 가치 실현

□ 교육감 제3기 공약사업 및 국정 과제의 지속 추진 지원

- 더 질높은 교육, 더 따뜻한 공존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더 건강한 안심교육, 더 평등한 출발 등 공약사업 및 국정과제의 지속 추진
- 핵심과제-주요업무 등과 연계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사업 재정 지원 확대

□ 기초학력보장 집중 지원, 미래교육기반 구축 등 공교육의 질 제고

-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결손 및 심리·정서 회복 지원, 유아·직업계고·다문화·탈북·장애·저소득층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디지털기반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학생용 기기 보급 및 에듀테크 활성화를 통한 공교육의 질 제고

□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서울교육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 전략적 재원배분과 정책정비를 통한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 중복·유사성과 사업의 구조조정이 반영된 교육정책사업 정비결과 반영 (목적사업 축소) 및 학교자율사업운영제 조기 정착을 통한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서울교육재정 운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효율적·효과적 실현 강화
 - 안전·사회통합·일자리창출 등 교육과 밀접한 사회적 가치 강화 사업 발굴·추진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II

2024년도 서울교육
예산편성 기본지침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1. 예산편성 기본 원칙



가 세입



2024년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항목별로 빠짐없이 반영

□ 재원별 편성 원칙

- 자체수입
 - 각종 자료를 기초로 세입 재원을 정확히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적합하도록 규모 산정
 - 전년도 징수실적, 당해 연도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수입원별로 그 규모를 전망하여야 하며, 세입의 과다 또는 누락이 없도록 함
- 의존재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기준, 내시된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하여 계상
 - 국고지원금은 내시된 금액을 예산에 계상
 - 내시되지 않은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 중 매년 반복적으로 교부되는 계속사업 등 예측 가능한 예산은 본예산 편성 노력
- 지방채
 - 지방채 수입이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범위 내에서 계상
 - 자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 계상
 - 승인액 중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만큼만 편성·발행

□ 자체재원 확보 노력 강화

- 시험검정사업비 등 수익자부담 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경비는 수지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할 것
-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근거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되, 매각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세입예산 편성에서 제외

□ 재정사업수요 발생 시 원인제공자비용부담원칙 적용

- 일반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동 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토록 함

나 세 출



□ 자원배분 원칙 준수

- 교육청과 학교 단위에서 집행할 재원을 구분하고, 교육청 수준에서 수행해야 할 성격의 사업을 최소화
- 민간부문이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은 민자를 유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을 도입

□ 성과주의 지향 예산 편성

-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
- 연례적으로 편성되어 온 모든 사업을 재평가하여 당해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최적 예산을 편성
- 성격이 유사하고 여러 사업부서에서 분산 추진되는 사업은 연계 강화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기능별로 묶어서 편성 관리



□ 예·결산 분석 및 환류 철저

- 예산편성 시 전년도 예산 및 전전년도 결산내용 등을 자체 분석하여 환류
- 일회성·행사성 사업을 지양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주력

□ 법령사항 반영 및 의회 등의 시정요구사항 개선 추진

-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소요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예·결산 심의,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또는 감사기관 등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개선 추진

2. 예산편성 세부 기준



가 세입예산 편성기준



2024년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항목별로 예산에 반영

□ 중앙정부이전수입

- 재원
 - 보통교부금 : 내국세 총액의 20.79% × 97% + 교육세 일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 특별교부금 : 내국세 총액의 20.79% × 3%
 - 증액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제1항에 의해 통지된 금액
 - 국가보조금 : 국고보조사업으로 별도 통지된 금액
 - 특별회계전입금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전입금
- 편성 : 국가에서 시·도교육청에 내시 또는 교부한 금액으로 편성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재원
 - 지방교육세전입금 : 「지방세법」제151조에 의한 지방교육세 전액
 - 담배소비세전입금 :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도(道)는 제외)
 - 시·도세전입금 : 시·도세 총액의 일정비율*
 - * (서울)100분의 10, (광역시, 경기·제주도)100분의 5, (세종, 도지역)1,000분의 36
 -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소요경비의 2분의 1의 금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
- 교육급여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 제43조의2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교육급여보조금
- 무상교육경비전입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 비법정이전수입 :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기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 편성 :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금액으로 편성

□ 기타이전수입

- 재원 : 민간이전수입과 자치단체간 이전수입
- 편성 : 민간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기부 또는 지원하는 금액으로 편성
 - 민간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이전이 확실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

□ 자체수입

- 재원 : 공유재산·물품사용·임대료 및 매각대금, 이자수입 등
- 편성
 - 사용·임대료 : 최근 수년간의 징수실적, 연간 사용수익허가(임대) 계획 등을 고려하여 반영
 - 자산매각수입 : 연간 공유재산·물품 처분계획에 의거 대상자산에 대한 매각 금액을 합리적인 추계기법을 사용하여 추정 반영
 - 이자수입 등 : 최근 수년간의 징수실적, 특이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

□ 지방채

- 편성 :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만큼만 편성·발행
 - 매년 교육부장관이 통보하는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

□ 순세계잉여금

- 편성 : 최근 수년간의 추이와 재정집행 중간점검 결과 등을 반영
 - 재정지출 과부족에 따라 임의로 과소 또는 과대 편성 지양

□ 내부거래

- 편성 :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반영

나 세출예산 편성기준



- ❖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비효율적 지출 감축
- ❖ 집행을 고려한 예산편성 및 관리로 이·불용액 최소화

□ 경상사업비

- 기본운영비 : 시도교육청별 여건, 수년간 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쾌적한 교실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전기요금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편성
 - 공적업무수행을 이유로 개인명의 휴대폰에 대한 사용비용 지원 지양(부득이 하게 지원할 경우 사용목적, 업무내용, 지원사유, 지원대상 및 월지급액 등에 대해 시도교육감 지침 마련 후 편성 - '22.4. 교육부 감사결과)
- 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경비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3조, 별표 1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 편성
 - 특정업무경비는 시도교육감이 자율 결정하되 과반 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결정
- 채무상환 : 2024년도에 상환해야 할 BTL원리금 편성



□ 교육사업비

- 신규사업 : 2024년도 신규 사업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출 증가분만큼 세입증대 방안 또는 기존사업의 감축 방안 마련
- 계속사업 : 원점(zero-base)에서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점검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 추진
 -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 계속사업은 집행률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규모, 지속 여부, 투자시기 등을 재검토
 - ※ 교육사업과 무관한 목적 없는 현금성 예산 편성 및 지원 지양(「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절차 준수)

□ 시설사업비

- 계속비 편성 : 공하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해에 걸쳐 계속비로 지출
 - 편성 : 집행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시설사업은 총사업비를 연차별로 구분, 해당연도에는 집행가능금액 만큼만 편성
 - ※ 계속비가 아닌 일반예산에 과다 편성하여 명시이월 관행 금지
- 계속비 또는 장기계속계약 : 학교시설사업은 학교 특성을 감안하여 공사기간 산정 후 해당연도에 집행가능액 만큼만 편성하고 계속비 또는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하여 이월액 최소화
- 설계공모예산 : 자체투자심사가 완료된 학교건축 관련 설계공모예산은 적정 사업기간 확보 등 필요시 중앙투자심사 전에 편성 가능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설계공모 비용으로 심사수당, 운영비, 공모비용 보상금 등 편성
- 사전기획: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규정에 따른 “사전기획” 비용 편성(※ 420-01목 기본조사설계비-사전조사비용 통계목 편성)

□ 정보화사업비

○ 대상

-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

※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구입비 및 임차료, 정보시스템 개발비 및 컨설팅 비용,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경비 등으로 구성

-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

※ 정보화 관련 표준화, 기술개발,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 전파 관리, ICT산업 기반조성, 정보격차 해소, 정보보호 강화 등

- 기타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전자정부법」 등

○ 편성 : 차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연차별·목별 상세투자 총소요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예산 요구

※ 총소요액 :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장비구입비, 임차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구축완료 후 3년간 운영유지관리비 및 추가구축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구성

- 신규사업 : 시스템의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장비구입비, 임차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구축 후 3년간 운영유지관리비 및 추가구축비,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구성

※ 신규사업은 예산 요구시 총소요비용 협의를 병행 추진

- 계속사업 : 사업시작연도(ISP포함)부터 당해연도까지의 기투자비용과 예산요구 연도부터 향후 3년까지의 투자소요를 모두 포함

- 예산요구서에 계약방식(장기계속계약 추진여부)을 명시하고,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사업기간과 총소요비용을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

※ 다년간 추진되는 대규모 정보화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철저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계속비 편성제도 적극 활용('22. 7월, 국회 예결위 결산 지적사항)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예산 요구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전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규모와 향후 변동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예산 요구



○ 검토사항

- 정보시스템을 신규 구축 및 현재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개선 시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운영·유지관리 비용은 기존 운영·유지관리비용 절감액 내에서 충당하도록 노력
 - 구축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교육부 EA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을 검토한 후 중복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산 요구
- ※ 예산 요구 시 교육부 EA관리시스템(eams.moe.go.kr)에 등록된 전산 장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등 관련자료 제출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은 관련 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고려하여 예산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 국고보조사업비

- 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제45조
- 교육부 등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은 시도교육청의 세세부사업과 1:1 (1개의 국고보조사업 : 1개의 세세부사업)로 맵핑하여 보조금 신청 및 관리
- ※ 1. 국고보조시스템 상으로 교부신청 등 작업 및 국고보조 사업관리를 수행해야 함
- 2. 새로운 국고보조사업을 편성할 세세부사업이 없거나, 이미 세세부사업이 기존의 국고보조사업과 맵핑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규로 세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새로운 국고보조사업과 맵핑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성립전 집행 가능

□ 지방보조금사업비

-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의의 : 교육감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사업)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 대상

- 민간경상보조·자본보조 : 민간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육감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 세출세목: 320-01 민간경상보조, 320-14 민간자본보조

- 자치단체경상·자본보조 : 교육감이 정책상, 재정사정상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 세출세목: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2 자치단체자본보조

【참고사항】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 :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제43조제1항, 각 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 보조(재정지원) 조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 및 집행지침」에 따라 관할 시도 내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하는 시설사업 지원금

(※ 620-11 세목에 편성, 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보조 조례 및 지침절차에 따라 편성 및 지원)

○ 원칙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시도교육청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지방보조금 예산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음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편성-집행-결산 전 단계)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하는 등 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며, 공모 등 사전 절차 준수 철저

* 관행적·반복적 사업 예산의 폐지삭감 여부 등

- 교육감은 사업자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산정 시, 과거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 사업과 함께, 일몰 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사업, 수익자부담원칙 적용 가능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삭감 또는 통폐합 추진
-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는 5년의 범위 내 보조금 지원 제한
- 지방보조금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적발 시에는 환수조치·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철저히 하고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 근절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24.1월 개통 예정) 운영 등을 통해 보조금의 교부·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 운영

※ 지방보조금 관리는 「지방보조금법」, 시도교육청의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르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운영 매뉴얼」 등을 준용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594호, 2023.1.12. 전부개정)

□ 학교회계전출금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 편성 : 학교 재정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최소화, 학교운영비 총액 지원 확대 등 편성 권고
 - 주기적 점검 및 정보공유 활성화: 교육청별 목적사업비 비율 현황 등에 대한 지속 점검 및 분기별 학교회계 운용 우수 사례 발굴, 정보 교류를 통한 우수사례 확산

□ 의무지출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범위 :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
 - 국고보조사업
 -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 편성 :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한 의무지출은 지출 및 지출규모가 의무화된 경비로서
최우선으로 재원 배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예산에 소요전액(시·도교육청 분담액 포함) 편성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 의의 :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
- 규모 : 본예산액의 0.1% 이하로 편성
- 편성·집행 : 예산편성을 최소화하되 경상비, 시설비 외에 교육시책사업에도
집행(경상비, 시설비, 교육시책사업비로 구분 집행)
 - 여비, 업무추진비, 교직원 복지지원 및 건당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는 집행
불가, 경상비는 10% 초과 금지
 - ※ 건당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는 반드시 해당사업에 예산편성 후 집행

※ 감사원 지적사항 : 예비비와 성격 중복, 경상비 및 시설비 집행 과다 등

□ 예비비

- 근거 : 「지방재정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
- 편성
 -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음
 - 연말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법」제43조의 예비비 계상 한도를 준수하여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방지



- 예비비 지출 제한(업무추진비, 보조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충당하여 활용
-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음

다 성과계획서 작성



- 근거 :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 작성대상 : 교육비특별회계 모든 재정사업. 단, 아래사업은 제외 가능
 - 법령이나 업무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대외공개가 곤란한 사항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 경상사업비
- 작성방법 : 재정사업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과제, 성과지표 등을 설정

※ 추경예산 등 예산변경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사업비를 변경된 예산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당초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참조

라 성인지 예산서 작성



- 근거 :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제44조의2제1항
- 작성대상 : 세부사업 기준으로 아래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구분	대상사업	비고
필수	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에 따른 시·도 교육청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 마다 수립 ▶ 시·도 교육청 자체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 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② 성별영향평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교육청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한 사업* *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선정사업
	③ 매년 교육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기준」에 포함 통보
선택	④ 시도교육청이 자체 선정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교육감 공약사업 등



- 정책분야·정책과제별 세부사업 현황

정책분야	정책과제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대상사업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아동 돌봄 지원 강화	유아및초중등 교육	교수학습활동 지원	유아교육	유치원 방과후과정	③
			교육복지	방과후학교및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운영	③
					돌봄교실운영	①,③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성별 기반 폭력 대응 강화	유아및초중등 교육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교원연수운영	③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③
				학생생활지도	성폭력 예방교육등	①,③
	성인지적 건강정책 강화	유아및초중등 교육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과정운영	교육과정운영 지원	③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한 성장 환경 조성	유아및초중등 교육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교원연수운영	③
					교직원인사	교원인사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①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과정운영	교육과정운영 지원	③
					교육자료개발 보급	③
			유아교육	유아교육운영	③	
			특수교육	특수교육운영	③	
			직업교육	직업교육운영	③	
				취업역량강화	③	
			특별활동지원	각종체육활동	③	
				학생단체활동	③	

정책분야	정책과제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대상사업
				학생생활지도	학생생활지도 지원	①,③
					성폭력 예방교육등	①,③
					학교폭력예방 및교육	①,③
				진로진학교육	진로진학교육 운영	③
			학교시설여건 개선	학교시설개선	학교시설환경 개선	③
		평생교육	평생교육	평생교육운영	평생학습운영	③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성인지대상사업 ①번 항목 포함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3,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성인지 대상사업은 '24년 개정 반영 예정으로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준용

- 작성방법 : 성평등 목표, 성인지 예산의 규모, 성별 수혜분석 및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등을 설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5] 서식1-14. 작성서식 참조



3. 목(그룹)별 편성 요령



가 인건비(100)



- ❖ 공무원 보수, 계약직교원 인건비 등
-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 계약직교원 관련 지침, 교육공무직원 임금업무 등 처리지침 등 적용

1) 편성 구분

- 공무원 인건비는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으로 구분하여 편성
- 교육공무직원인건비는 직종별로 구분하여 편성
 - ※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통합대상이 아닌 직종은 해당 세부사업에 설정
- 법령(수당 규정 및 조례)상 지급근거가 없는 수당 성격의 예산편성 불가

2) 편성 인원

-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교육공무직원은 2023년 9월 현재 기준
- 계약직교원 및 교육공무직원은 채용실적 및 증감추세를 감안하여 편성

3) 공무원 인건비

- 대상 세목 : 110-01(보수), 240-02(맞춤형복지비), 320-03(공무원법정부담금), 620-07(공립맞춤형복지비)
 - ※ 특정업무경비는 인건비가 아닌 '기관기본운영비' 등 해당 세부사업에 편성
- 편성기준 :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

4) 계약직교원 인건비(기간제교사, 시간제강사 등)

- 대상 세목 : 110-05(계약직교원보수), 240-02(맞춤형복지비), 320-13(계약직교원법정부담금), 620-01(인건비지원), 620-07(공립맞춤형복지비)
- 편성기준 : 관계법령 및 해당부서 지침에 따라 편성

5)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 무기계약근로자 】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상용 근로자 인건비
- 대상 세목 : 110-04(공무직보수), 240-02(맞춤형복지비), 320-12(공무직법정부담금), 620-01(인건비지원), 620-07(공립맞춤형복지비), 620-14(사립학교맞춤형복지비), 620-16(사립학교근로자인건비지원)
- 편성 기준 :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 및 지침, 해당부서 지침 적용

【 기간제근로자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 대상 세목 : 110-03(기간제근로자보수), 240-02(맞춤형복지비), 320-05(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620-01(인건비지원), 620-07(공립맞춤형복지비), 620-14(사립학교맞춤형복지비), 620-16(사립학교근로자인건비지원)
- 편성 기준 : 생활임금액 적용

❖ 2024년도 생활임금액 : 일급 97,120원 / 시급 12,140원



나 물건비(200)



❖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기관의 기본운영에 필요한 경비

- ◇ 각 부서별 표준화된 운영 경비, 청사관리, 차량관리, 피복비, 각종 공공요금, 임차료, 시설물 소규모 수선비, 유류대, 일·숙직비 등

❖ 각종 교육사업 행사추진 관련 경비

- ◇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위탁사업비, 업무추진비 등

1) 공통사항

-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써 낭비요인 제거 등 자발적인 절약 노력 강화
- 부서(기관)별 기본운영비 표준화 및 총액 배분
 - 부서(기관)별 기본운영비(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를 표준화하여 총액 배분
 - 각 부서장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자율 편성
- 경상운영비 감축 노력 강화
 - 업무추진비, 인쇄비, 여비, 각종 수당 등 경상적 경비 최대한 감축
 - 효율적 사업추진 및 현실화를 반영한 기준경비 인상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비는 억제 노력
 - 우리교육청 「조직문화개선 추진계획」(15.4.20.)에 따른 의전문화개선사항 준수

【의전문화 개선】

- ❖ 회의 : 생수 이외의 의례적인 차, 음료, 간식 등 제공 자제 등
- ❖ 행사 : 행사장 내외장식 최소화(현수막은 행사장 내부 1개 설치 원칙), 주요 내빈 가슴에 꽃는 꽃(코르사주) 하지 않기 등

2) 운영비(210)

- 일반수용비는 전례답습 및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을 지양하고, 과년도 집행실태 등을 분석하여 실제 필요한 예산액만 요구
 - ※ 경상경비 증가 최대한 억제
-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집행상황에 의거 실소요액만 계상
- 급량비(210-04)는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 불가
 - ※ 수련원, 연수원 등에서 학생(연수생)에게 급여하는 주식비·부식비·후식비 등 급량비로 편성
 - ※ 워크숍, 연찬회, 연수, 회의 등 행사성 경비는 230목에 계상
- 교육운영비(210-12) 중 ‘기타교육운영비’에 교육청(직속, 지원청)이 주관하는 학생 대상 교육·세미나·회의·행사·대회출전 등에 참석·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한 매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변상적 경비 편성
 - ※ 보상금(310-01) 목에 편성 불가
-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초과근무실적 등을 분석하여 실소요액만 계상
- 운영수당은 법령, 조례 등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하고, 그 밖의 수당은 예산편성 기준단가 적용
- 임차료는 실제 필요한 최소 소요액만 계상하고, 각종 회의·연수 및 행사 등은 가급적 교육청 소속기관·기타 공공기관 등의 시설을 이용
-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장비 운용 상황과 소요량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소요액만 계상
- 부서운영경비(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부서운영경비로 변경)는 편성기준인 정원 구간 및 그에 따른 기준액에 따라 편성
 -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 가능)



3) 여비(220)

- 국내·외 여비는 사업계획 검토 및 물량 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절감
 - 단순 자료수집, 위로·격려 차원의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
 - 교육감, 부교육감 이외의 해외출장 시에는 수행원을 인정하지 않음
 -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 출장을 지양, 출장기간 및 인원 최소화
-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는 일반수용비(210-01)에 계상
- 이전비, 가족여비,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계상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는 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를 계상하고, 기타 부대경비(연회비, 선물비, 환송연 행사경비 등)는 업무추진비에 계상

4) 업무추진비(23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기관운영경비, 정원가산금)는 조례·규칙 및 훈령의 직위와 정원, 기준단가에 따라 편성
-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
 - 대회 출전 각종 격려금, 학생·학부모 격려,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경비의 목적에 따라 사업부서의 정책사업에 편성(기관운영 정책사업에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업무추진비는 1인당 30,000원 이내로 편성
 - 참석인원 및 횟수는 최소한으로 산정하고 증액 지양

5) 복리후생비(240)

- 교직원 학술·연구모임 지원, 교직원 동호회 지원 경비는 최소 소요액만 요구
- 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교원연구비
- 교직원 및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비 계상
-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교원 담임수당, 교직수당, 기타수당) 계상

-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는 반드시 240-03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6) 직무수행경비(250)

-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계상
- 특정업무경비는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급대상과 금액을 시·도교육청이 자율 결정
 - 업무의 성격이 적합하여야 하며, 전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최근 3년간 당초예산 평균 증가율의 1/2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 ※ (산출예시) 전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 2억원, 전년도 포함 최근 3년 당초예산 평균 증가율 10%인 경우 ⇒ 총액한도 = 2.1억원 (2억×(1+(10%/2)))
 - 지급대상 및 지급액 결정은 과반 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결정
 - 지급 대상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로 전담조직(과 또는 계)이 설치된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담당급 이하)에게 지급
 - ※ 단, 교육감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원외 직원도 적용 가능
 - 특정 업무 경비 상호간에는 중복 지급할 수 없음
- 기타직무수행경비
 - 감사활동비는 출장 시 마다 1일 1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관재활동비는 기준경비에 관한 훈령상 '특정업무경비'의 회계담당공무원의 월정액을 초과할 수 없음

7) 연구개발비(260)

- 교육청 사업의 지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경비
-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감리비 포함)



다 이전지출(300)



- ❖ 예산성과금
- ❖ 교육행정기관 주관 각종 교육 및 교육행정 성과의 제고를 위한 평가 및 경시대회 등 추진에 따른 포상금
-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 ❖ 공무원·계약직교원·공무직·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1) 보전금(310)

【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등) 】

- 법령이나 국가 지침에 의하여 저소득층학생 등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물품, 보철구 제작비

【 자체사회보장적수혜금 】

- 조례에 의하여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 기반 각종 복지성 수혜금

【 사회복지무요원보상금 】

- 「병역법」에 의한 사회복지무요원의 보수,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 기타보전금 】

-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장려금, 상금 및 보상금 계상
- 교육, 회의, 행사, 체전에 참가하는 학부모 등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매식비 및 교통 실비
- 체육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 단순 참가자는 지급 제외

【 배상금등 】

-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 포상금등 】

- 예산성과금 및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 파견 공무원의 학자금 등 업무관련 해외기관 위탁에 따른 제비용
- 교육행정기관 주관 각종 교육 및 교육행정 성과의 제고를 위한 평가 및 경시대회 등 추진에 따른 포상금
 - 직원의 사기 진작 등 기관운영을 위한 사업의 경우 업무추진비에 편성하고, 기관포상의 경우 포상계획 수립 시 포상금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침을 설정하여 소모적이고 비교육적인 집행을 지양

2) 민간이전(320)

- 민간경상보조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심의 제외 가능(620목에 편성)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원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민간위탁금
 - 교육청이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 전액 회수하는 제 사업비
 - 교육청의 위임 또는 위탁 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써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 민간자본보조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보조에 편성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원하는 자본적 보조금
- 공무원·계약직교원·공무직·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법정부담금
 -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등
- 연금부담금
 - 교직원 본인 및 가족 사망조위금, 교직원 재난부조금

3) 자치단체등이전(330)

-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민간에 교부하는 보조금 중 자본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치단체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보조
- 자치단체보육료보조
 -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3세~5세 어린이집 원아에게 지원하는 자치단체 보육료 보조 경비
-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제외)

-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 ※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 한국교육개발원 운영비 부담금(방송통신중 및 방송통신고)
- 자치단체간부담금
 - 자치단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등한 자치단체 상호간 부담하는 경비
 - 교육청이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법령 또는 조례, 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부담금

4) 해외이전(340)

- 해외경상이전비
 -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경비
- 국제부담금
 - 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구,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및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



라 자본지출(400)



- ❖ 토지매입비,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 건물, 기계장치, 입목죽, 사무용기기 및 집기, 교구용기기 및 집기, 도서, 예술품 등 취득비
- ❖ 법률상의 권리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

1) 토지매입비(410)

- 학교, 사무실, 창고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
-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 (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이농비, 실업비 등)에 대한 보상비
-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 토지 취득 후에 들어가는 기타 비용(정지비 제외)

2) 건설비(420)

【 학교 신증설 】

- 신설학교 교사 기준면적
 - 교육부의 '연도별 학교신설비 교부기준'상의 건축연면적을 적용하되,
 - 신설학교의 입지여건에 따라 건축면적 추가 사유가 발생된 경우 교육부의 '연도별 학교신설비 교부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면적은 자체 예산으로 반영

〈 교육부 학교신설 예산 교부 기준면적〉

(단위 : m²)

학교급별	18학급	24학급	30학급	36학급	42학급	48학급
초등학교	7,703	9,091	10,705	11,868	13,707	15,320
중 학교	8,115	9,303	10,753	12,673	14,124	15,612
고등학교	9,118	10,906	12,413	14,332	16,214	18,059

〈 체육관 기준면적〉

(단위 : m²)

구 분		12학급	18학급	24학급	30학급	36학급	42학급~	비고
학교 신·개축	초	675	675	736	768	768	828	기준
	중	675	736	768	828	828	828	
	고	675	736	768	828	828	828	
기존학교 증축	초	810	810	883	922	922	994	20% 가산
	중	810	883	922	994	994	994	
	고	810	883	922	994	994	994	



☆ 학교 신·증설 내부비품비 지원기준 ☆

❖ 관련 근거

- 학교 신·증설 내부비품비 지원기준 조정(학교지원과-12954, 2021. 9.15.)

❖ 학교급별 지원기준 (1실당)

(단위: 천원)

구분	단가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급)	비고
학생용 책·결상	100	일반교실	2,800	900	
전자칠판	10,000	일반교실	10,000	10,000	
일반칠판	1,040	특별·교무실	1,040	1,040	
게시판	360	일반·특별	360	360	
청소도구함	280	일반·특별	280	280	
사물함	100	일반교실	2,800	900	

※ 유치원 학급증설에 따른 내부비품비 지원기준: 학급당 7,000천원 지원

(유치원 신설에 따른 내부비품비는 개교경비 지원예산에 포함)

※ 기타 비품비: 학교별 및 규모별로 다음 항목별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단일 항목만 계상

- ① 체육관(강당 겸용) : 34,000천원(단, 수영장 겸용 체육관은 10,000천원 추가)
- ② 강당(다목적 겸용) : 23,000천원
- ③ 다 목 적 실 : 12,000천원

❖ 예산지원 참고사항

○ 1실당 지원기준 학생수

- 초등학교 28명, 중학교 28명, 고교(일반계) 28명, 특수학교(급) 9명

❖ 지원방법

○ 학교 신·증설에 따른 내부비품비 지원

- 초등학교: 개교연도에 완성학급 전액 지원
 - 보통교실: 실제 편성 예정학급에 소요되는 내부비품비 및 완성학급 기준 지원액
 - 특별교실: 학교급별 내부비품 구입 소요예산 전액 지원
 - 교 무 실: 학교급별 내부비품 구입 소요예산 전액 지원

▪ 중·고등학교

① 개교연도(1차년도)

- 보통교실: 실제 편성 예정학급에 소요되는 내부비품비 기준 금액 지원
- 특별교실: 학교급별 내부비품 구입 소요예산 전액 지원
- 교 무 실: 학교급별 내부비품 구입 소요예산 전액 지원

② 2차연도: 신입생 편성 예정학급에 소요되는 보통교실 지원 금액

③ 3차연도: 완성학급 기준 지원액에 의한 잔액 지원

○ 학급증설학교 내부비품비 지원

- 지원대상: 학년도별 학급편성 후 학생수 증가로 학급이 증설된 학교
단, 내부비품이 기 확보되어 있는 학교는 제외
 - ☞ 예시: '19학년도 30학급, '20학년도 28학급, '21학년도 30학급의 경우,
'19년도 내부비품 사용이 가능한 경우 미지원
- 지원기준: '학교 신·증설 내부비품비 지원기준'에 따름



【 학교기타시설증축 】

- 학교기타시설은 대부분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체육관, 다목적강당, 특별교실, 복합화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으나, 지자체와의 대응투자사업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로
-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되, 재정여건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여 추진
- 복합화 사업은 시 또는 구에서 분담하기로 사전에 협의되고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요구

【 교육환경개선 】

- 냉난방 개선 등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개선비 계상
 - 학교별로 단위사업 통합하여 예산 편성
 - 안전관련 사업(석면해체·내진보강) 연계 반영
- 노후 교사 개축 사업비 편성

- 교육현장에서 요구한 노후화 되어 개선이 필요한 교육시설 분야에 대하여 현장 실태조사 및 시민참여 검증 등을 통해 대상사업(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분야별 대상사업(11개)을 학교단위로 통합하여 3년에 1회로 공사를 시행하는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개선」 방식으로 편성·추진하되, 간접사업(석면해체·내진보강)과 함께 연계 시행하여 학교별 공사 횟수 감축 및 행·재정 효율성 제고
 -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개선 추진은 소요재원, 학교여건, 긴급성 등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 노후교사 개축사업은 개축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요구
- 노후교사 개축 시에는 학생수, 교육과정, 학교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면적 계상
 - 개축 완료시점의 학급수를 기준(학생배치계획 참고)으로 신설학교 기준면적을 적용하여 적정규모 산정

【 학교급식시설 】

- 급식시설 현대화 등 학교급식 환경 개선 소요경비 계상
 - HACCP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여건조성 소요경비 계상
- 신규 급식시설 설치학교, 지하급식실 이전 예산을 우선 요구
 - 학교별 급식실 설치연도 및 노후도에 따라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급식실 보수예산 요구
 - 학교 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시설·기계·기구 등 지나친 고가 기계·기구류 구입예산 요청은 미반영
 - 주요 기계·기구에 대한 연차별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연도별로 예산 요구
 - 연차별 계획이 수립된 사업은 계획에 따라 우선 계상하고, 기타 사항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요구
 - 시설비 지원기준, 기계·기구 지원단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유의
 - ※ 예산 요구 시 지원기준 및 단가에 대한 설명자료 제출



☆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기준단가 및 내용연수 ☆

사업구분		단위	산출 기준		기준단가 (단위:천원)	비고 (내용연수)	
화장실	전면	㎡	1동당 바닥면적 바닥, 벽체 타일마감 및 일체형세면대, 천정형 복사 난방패널, 친환경위생기구, LED전등기구	40㎡이하	2,650	15년	
				40㎡초과 50㎡이하	2,640		
				50㎡초과 60㎡이하	2,630		
				60㎡초과 80㎡이하	2,620		
				80㎡초과	2,610		
전기시설	수배전 시설	식	수변전 설비	한전표준공사비, 사용전검사수수료, 감리용역비, 관급자재비(950kW 기준), 공사비	172,000	20년	
			옥외인입 간선	부지외부~수변전 설비까지 공사	25,000	-	
	방송 장비	식	방송실	디지털 전관방송장비, 디지털 모듈레이터, 블루레이 플레이어	90,000	10년	
			체육관		46,000	10년	
			시청각실		42,000	10년	
		실 (67.5㎡)	선로교체	TV(동축케이블), 인터넷 · 전화(UTP), 방송 배선	4,200	-	
	냉난방	냉난방	실 (67.5㎡)	부분 개선	EHP→EHP	▶ EHP 및 설치옵션반영 ▶ GHP 실외기 단가상승 반영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대기오염저감장치 반영 ▶ 냉난방전기 공사비 포함 · 전력간선설비 · 실외기전원설비	7,030
GHP→GHP				11,470	10년		
전면 개선				EHP → GHP(60%) +EHP(40%)	10,120		12년
GHP → GHP(60%) +EHP(40%)				10,070	10년		

사업구분		단위	산출 기준	기준단가 (단위:천원)	비고 (내용연수)	
창 호	외부 창호	실 (67.5㎡)	▶ 중중연 이중창 적용(복도측창호 포함 4개소) ▶ 에너지효율 1등급 ▶ 안전대 · 방충망 ▶ 양면배강도유리 적용 포함	18,000	25년	
	교실 출입문	실 (67.5㎡)	실당 2개소	3,200	15년	
	중연창	실 (67.5㎡)	실당 2개소	3,300	30년	
외 벽	외벽	실 (90㎡)	▶ 알미늄시트판넬(90%) + 화강석(10%) ▶ 외단열(경질우레탄폼보드 80mm) 적용	19,220	치장벽돌 30년 판넬, 석재 15년 타일 20년 미장(몰탈) 6년 드라이비트 15년	
소 방	기계실	식	▶ 주펌프(전동 1대)+예비펌프 소방펌프(엔진펌프 1대) 650LPM, 55M, 20HP 기준 ▶ 기계실 내 배관 및 동력 전원 등(저수조교체 제외)	42,000	20년	
	옥내 소화전	개소	옥내소화전 및 배관 교체 (기계실~옥내소화전 배관교체)	2,100		
	전기 소방	개소	수신반, 자동화재탐지시설(감지기선로 포함), 유도등, 시각경보기 등 부분교체	11,310		
	소방 내진	식	소방배관 내진설비	9,610	전면 개선 시 적용	
방 수	옥상 방수	실 (90㎡)	바닥 · 벽 노출복합방수, 바닥 몰탈 철거후 재설치 30% 반영	12,500	15년	
바 닷	목재 후로링	실 (67.5㎡)	시스템마루틀 적용	17,700	15년	
	비닐 계열	실 (67.5㎡)	비닐타일 → 비닐계시트 적용	9,150	8년	
도 장	외부	실 (90㎡)	현장정리, 고소작업장비, 바탕정리, 친환경페인트 2회, 디자인도장 포함	1,130	6년	
	내부	실 (90㎡)	천장포함 (텍스없음)	현장정리, 가설재, 바탕정리, 친환경페인트 2회	3,220	5년
		실 (90㎡)	천장제외 (텍스있음)		1,620	5년
		실 (45㎡)	계단실		2,040	5년



사업구분		단위	산출기준		기준단가 (단위:천원)	비고 (내용연수)
외부환경	배수로	m	300*400 U형측구, 디자인그레이팅 뚜껑		297	20년
	축대	m ²	옹벽	L형 콘크리트 H=5m, 문양거푸집, 강관비계비 포함	977	30년
	담장	m	철재	메쉬웬스 H=1.8m	301	20년
		m	조적	담장 H=1.8m, 기초비용 미포함	443	20년
	포장	m ²	콘크리트	T=20cm, 보조기층T=20cm	90	20년
		m ²	아스콘	표층 5cm, 기층 10cm	95	20년
		m ²	보도블럭	인조화강석블럭 T=6cm, 보조기층 T=20cm	58	10년
		m ²	우레탄	T=13cm	119	10년
급식시설	전면	m ²	급식실	$Y = -489 \times \ln(x) + 5,474$ ① X : 바닥면적(m ²) ② Y : 바닥면적 1m ² 당 소요단가(천원) ▶ 학교급식환경개선 매뉴얼 개정판(2022)의 급식실 면적 적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5px auto;">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기타공간 구획 타일, 스텐보강 등 마감재 설치 급배기, 급수급탕, 냉난방기 등 기계 설비 및 전기공사 </div>	2,793 (240m ² 기준)	20년
		학생식당	바닥, 벽, 천장마감 및 냉난방기 및 환기 설치	1,260	20년	

3) 유형자산(430)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입목죽, 전기 통신기기 등의 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복사기 등 행정사무기기 및 집기 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교구용 기기 및 집기 취득비
- 학교도서관 및 도서실, 기록관 등의 자본 형성적 도서 구입비
- 박물관유물 유상취득

4) 무형자산(440)

- 법률상의 권리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
- 법률상의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 영업권
- 소프트웨어 및 교육용콘텐츠 취득비 등

마 전출금등(600)



- ❖ 일반자치단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자금
- ❖ 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자금
- ❖ 학교회계전출금
 - ◇ 공·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인건비, 학교운영비, 목적사업비, 학교환경개선사업비, 맞춤형복지비, 유치원 누리과정학비지원 등
 - ◇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인건비, 운영비) 등

1) 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특별회계전출금(610-02)

- 시·도교육청 간 위탁사업 및 분담금 등이 발생할 경우 통합재정자료 추출을 위해 정확한 세입·세출과목으로 편성
 - 세입 : 이전수입-기타이전수입-자치단체간이전수입-전입금(16201)
 - ※ 민간이전수입(16100)에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
 - 세출 : 전출금등-기타특별회계전출금(610-02)



2) 국립학교학생지원경비(610-03)

- 시·도교육청 관할 전체 학생(국·공·사립)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추진하거나 조성·권장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시도 내에 소재하는 국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한 국립학교회계로 지원하는 경비

3) 공립학교 학교회계전출금(620-01 ~ 620-07)

- 단위학교의 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
- 각종 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배분하여 목적사업비 비중 최소화
- 학교로 전출하는 사업예산은 반드시 '학교회계전출금' 목으로 편성
 - ※ 운영비(210) 등으로 편성할 경우 학교로 전출할 수 없음
- 학교단위에서 직접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규모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공사, 물품구매, 정보화 사업에 한해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집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비리·부조리 사전 차단
-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시달
-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정지원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통보

4) 사립학교 학교회계전출금(620-08 ~ 620-16)

- 예산 편성 시 최근 수년간의 통계자료를 기초로 적정 소요액 산정
-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각각 산출하여 부족액을 계상하되 반드시 지원기준 설정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기타학교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

【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

-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 산정하되,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계상
 - ※ 학교급별, 계열별, 규모별
- 인건비 산정방법
 - 공립학교 교직원의 정원과 정년을 기준으로 하되, 시간외근무 수당과 연가보상비 산정은 공무원 편성기준 적용
 - 명예퇴직한 사립교원을 사립학교 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경우 임용권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임용
 - ①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고 임용
 - ②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지 않고 퇴직교원 기간제교원 수준으로 보수 지급
- 운영비 산정지침
 - 공립학교 학생 1인당 운영비 기준으로 하고, 학생수·교원수 등 각종 통계자료는 자체 수용계획 및 전년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소요액 산정
 - 장학금 및 수업료 면제액은 공립학교 수준과 균형 유지

【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

- 입학금, 수업료 및 법인전입금은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자체 기준에 따라 산출
- 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은 의무 전입토록 하고, 부담능력이 없는 법인은 연차적 부담계획을 제출받아 부담 유도

【 보조결정 및 정산 방법 】

-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운영비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인건비에 충당하여 운영비 지원액을 최소화
- 인건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보조하며, 인건비는 정산하고 운영비는 정산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자구노력 유도 】

- 토지, 임야 등 저수익성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대체 권장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따로 적립하는 경우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이를 제외함
- 학교운영비 순세계잉여금 관리 철저
 -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액 중 학교운영비는 경상비보조의 성격으로 당해연도의 학생들을 위하여 전액 집행하는 것이 원칙임
 -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결함지원의 효율성 제고

바 예비비및기타(700)



- ❖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
 - ◇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
- ❖ 교육청이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보조금 반환
- ❖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예비비 등 다른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4. 투자사업비 편성기준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

가 공통사항



- 모든 사업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구분이 명확하고 사업효과 측정이 가능한 단위사업으로 구분하되, 2024년도 완공예정 사업을 우선적으로 요구
- 학교신설 등 규모가 큰 사업은 예산요구 시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상비 및 당해연도 실제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여 이월 및 불용액 발생 예방
- 완공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중 실시설계가 완료된 대규모 사업은 필요할 경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 사업으로 요구
- 모든 시설사업은 지원 대상학교 및 학교별 구체적 지원내역을 확정하여 계상
- 학교신설 사업은 토지매입비(보상비 포함)를 우선 요구
- 투자계획 수립, 예산요구 전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중복 투자, 예산부족 등을 예방
-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은 시 또는 자치구에서 분담하기로 사전에 협의된 사업에 한하여 요구(투자심사 후 확정된 사업만 예산 요구)
- 용도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대상 및 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포괄성 예산은 면밀한 검토 후 요구
- 학교의 시설기준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투자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시설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시설기준 및 예산편성단가 조정안 적용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및 각급학교 교구기준



나 계속사업



-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추진 전망과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보완한 후 예산 요구
- 예산에 설계비 등이 계상된 사업도 학생수용계획 변동 여부, 사업시행 필요성,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예산 운영의 효율화 도모
- 사업계획 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라 총 사업비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소요액만 요구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가는 원칙적으로 요구 불가
 - 다만, 불가피하게 사업비 증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부서와 협의 후 요구

다 신규사업



- 투자심사 대상 주요 신규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 요구
- 주요 신규사업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전문가의 자문, 환경 및 교통 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거쳐 사업의 객관성과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라 정보화사업



- 정보화사업비(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비로 2억원 이상)는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별로 편성

5. 건전재정 운영 지침



가 적정 재정규모 유지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



-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일시차입금 및 채무부담행위액은 다음 범위 내로 제한

구분	비율	비고
일시차입금	전체예산의 10% 이내	전년도 수준 유지
채무부담행위액	전체예산의 3% 이내	전년도 수준 유지

나 세수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 운영



- 업무추진비성 경비의 다른 비목으로의 부당 편성 금지
 - 편성기준 외 기타 사업비(급량비 등)에 편법 편성 금지
- 축의·부의금품, 격려금품, 선물 등의 경우 집행 시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 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준수
- 인쇄비, 각종 수당 및 직무연수 경비 등 절감 편성
- 보상적 성격의 국외여비 편성 지양
- 사업추진에 따른 불요불급한 비정규직 인건비(인원, 근무일수) 편성 지양
- 기타 경상적 경비 최대한 절감 편성

다 선심성·행사성·낭비성 예산 편성 금지



- 보전금(보상금, 배상금등, 포상금등)은 합리적 기준에 의해 편성
- 격려금품, 위로금품, 협의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성 경비의 보전금 편성 금지



라 자금운용 최적화



- 자체 자금운용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자수익 제고 노력 철저

마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편성 및 집행 철저



-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예산액의 0.1% 이하로 편성
- 지원 대상기관 :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 예산 운영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낭비요인이 있는 사업은 억제
- 국회 및 감사원 등에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 * 예산 규모가 크고, 명확한 집행기준이 미흡하여 기관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됨
- 여비, 업무추진비 및 교직원복지지원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고, 건당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는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 예산과목
 -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 경상교육지원사업비(28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470-01)
 - 각급학교 : 학교특별교육지원비(공립, 620-06),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620-13)

바 재정 분석·진단 강화



- 중점 추진하는 사업은 착수단계부터 종료 시까지 사업효과의 관점에서 관리하고 실적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시 직접 반영
- 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체계적 분석·환류 철저

6. 세출예산 운용기준⁴⁾



- ❖ 적정예산 편성 및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여 이·불용액 최소화
-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적정한 예산편성

□ 예산 배정

- **【의의】** 일정 기간(월별·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최종예산 집행권자의 지출원인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통제수단
 - ※ 최종예산 집행권자는 이 배정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체결 등 집행절차 수행
- **【방법】** 예산부서는 세부사업별·목 단위로 예산을 배정하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원가통계목까지 관리

□ 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

- **【예산의 이용】**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예산의 전용】**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목,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목, 동일 세부사업 내 목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 전용 제한

-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인건비(총액인건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20), 상환금(510)은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 (*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음)
- 업무추진비에 총당하기 위하여 다른 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전용할 수 없음

4)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교육부) p.26~32



※ 예산의 변경사용 : 동일 세부사업 동일 목내 세목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세부사업 내 목이 변경될 경우 전용에 해당됨

- **【예산의 이체】** 회계연도 중에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며 「예산현액」으로 관리

※ 이체의 단위는 세부사업으로, 이체로 인한 세부사업의 분할·합병은 불가

□ 예산의 이월

- **【의의】**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 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명시·사고·계속비 이월)
- **【배정】**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현액」으로 관리

□ 이월·불용액 최소화

- 관리목표 설정 : 매 회계연도 마다 이·불용액 목표를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설정하여 관리
- 예산편성·집행 관행 개선 :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연내 집행을 확대하여 이·불용액 감축 추진
 - 명시이월 :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등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명시이월 감축
 - 사고이월 : 긴급입찰 및 선금제도를 활용하여 사고이월 최소화
- 집행 중간점검 :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집행실적 및 향후 지출계획 등을 점검하여 이·불용 예상액을 추경 시 감액 조정하고 지출수요가 높은 사업에 재편성하여 재정운용 효율화
- 집행관리 : 수시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재정집행점검단* 운영 등으로 집행상황 점검·지도,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적극적인 집행관리 추진

* (구성)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주요 국장과 소속 부서장으로 구성

(역할) 주 1회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월 2회 실적 관리 및 점검, 부진사업 원인분석 및 장애요인 개선 등

7. 교육부 협조 요청사항⁵⁾



□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교육활동보호 관련 예산 편성 협조 요청

- 추진배경
 - 부당한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마련(‘22. 12.27.)
 - 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 증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예방·대응·상담·치유 절실
- 추진내용
 -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원 강화) 본래 기능인 침해예방·피해교원 지원·복귀 및 사후지원 외에 변호사, 상담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소송제기 전에 분쟁조정 기능을 확대하고, 밀도 있는 심리상담 지원
 - (교육활동 침해 및 조치현황 분석) 법령에 근거한 실태조사에 의해 매 학년도 학기별 교육활동 침해 및 조치 현황을 수집, 분석
 - (정신건강·심리치료 지원)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우울증 등 심리·정서적 문제 해소를 위해 우울증 예방 등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상호 존중 문화 조성) 시도 및 학교단위로 교육 3주체(학생·학부모·교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교육공동체 협약 마련·체결, 홍보 등 존중 문화 조성
 - (학부모 교육 강화) 교육활동 보호 미흡 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내용을 강조한 맞춤형 교육활동 보호 예방 자료 개발 및 보급
- 시도교육청 협조사항
 - 교원치유지원센터 내 정신건강·심리치료 지원, 상호존중문화 조성, 학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 편성 확대(지방비 대응투자 등) 및 자체 사업 추진 강화

5)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교육부) p.125



□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결손 해소 예산 편성 협조 요청

○ 추진배경

-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진단 및 맞춤형 학습지원, 코로나19 교육결손 해소를 지원하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마련(’22. 10. 11.)
 ※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국정과 제 82-3(AI 기반 기초학력 제고), 82-5(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
-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 학습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학습을 집중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수립(’23. 6. 21.)

○ 추진내용

- 국가시책사업(특교 예정) ‘기초학력 보장’을 통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지원 강화
- 국가시책사업(특교 예정) ‘교육결손 해소’를 통해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과보충, 심리·정서·사회성 회복 프로그램, 학습지원 튜터 지속 지원
- 전학년 대상 지원은 지속 추진하되,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과제별 필수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
- 책임교육학년(초3·중1) 대상으로 AI 코스웨어 등을 활용한 정규수업 - 방과후 연계 교과보충튜터링, 방학 중 학습도약 계절학기 운영
- ‘교육결손 해소 지원’ 사업 내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책임교육학년’ 지원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전체학생의^[24] 20% →^[25] 30%)

○ 시·도교육청 협조사항

- 기초학력 보장(진단-보정 시스템 등), 교육결손 해소(교과보충, 학습지원 튜터 등) 사업 예산 편성 확대(지방비 대응투자 등) 및 자체 사업 추진 강화
-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교육결손 해소’ 지원 사업의 모든 과제에 대한 시도교육청 지방비 대응투자 비율 적극 반영
 ※ 「2023년 교육결손 해소 지원 계획」 내 지방비 대응 투자 비율 : ⁽²⁴⁾ 30% 의무 → ⁽²⁵⁾ 50% 의무

[참고]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중점사항



가 개요



□ 추진배경

- 시의회 주요 지적사항(결산검사 등) 분석을 통한 중점사항을 예산편성, 집행 과정에 반영하여 반복된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교육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함
- ‘예산편성-집행-결산-평가’의 선순환 체제로 상시 피드백 실시



□ 결산의 절차





□ 결산서 구성

- (세입·세출결산) 예산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명시
- (기금결산) 각 기금별로 수입·지출결산 사항을 명시
- (재무제표)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 운영표, 순자산 변동표를 작성
- (성과보고서) 예산의 성과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분·집행한 후,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 보고

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영방안



□ 교육비특별회계

- (세입 적정 재원 확보)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세입구조 상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결손 등 재정여건이 유동적인 만큼, 적정 재원의 확보 필요
 - 미수납액 발생 및 불납결손 최소화를 위한 자체 수입 관리 철저
- (불용액, 이월액 등 최소화를 통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매년 반복되는 과도한 불용액 및 이월액, 예비비 집행잔액 발생 등은 세출 예산의 합리적 배분 및 집행을 저해하므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여 한정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도모
 - 인건비, 시설사업비 등의 반복적인 불용액 발생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예산의 전용 최소화)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나, 예산의 용이한 집행 및 사업 추계 오류 해소 등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용 최소화 운영
-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결산) 결산 시 성과달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기금

- (기금 관리 철저 및 수익률 제고) 관련 법규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며, 회계장부에 누락되지 않도록 기금 잔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고, 정기예금 예치 등을 통한 기금 수익률 제고 노력 필요
- (성인지 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 작성

□ 공통

- (법규 준수) 예산 집행 시 법규를 준수하여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 제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III

예산편성 기준경비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1.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



□ 인건비

구 분		지 급 근 거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제33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32조	
수당		☞ 아래 '공무원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괄호() 내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상여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공무원수당 제6조의2 (제5조의2)	
	정근수당	공무원수당 제7조 (제6조)	
	성과상여금	공무원수당 제7조의2 (제6조의2)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공무원수당 제10조 (제10조)	
	자녀학비보조수당	공무원수당 제11조	
	육아휴직수당	공무원수당 제11조의3 (제11조의2)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공무원수당 제12조 (제12조)	
특수근무수당 등	위험근무수당	공무원수당 제13조 (제13조)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수당 제14조 (제14조)	
	업무대행수당	공무원수당 제14조의2 (제14조의2)	
초과근무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	공무원수당 제15조 (제15조)	
	야간근무수당	공무원수당 제16조 (제16조)	
	휴일근무수당	공무원수당 제17조 (제17조)	
	관리업무수당	공무원수당 제17조의2 (제17조의2)	
실비변상 등	정액급식비	공무원수당 제18조 (제18조)	
	명절휴가비	공무원수당 제18조의3 (제18조의3)	
	연가보상비	공무원수당 제18조의5 (제18조의5)	
	직급보조비	공무원수당 제18조의6 (제18조의6)	
겸임수당	겸임수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	

2. 교육부 훈령 등에 의한 기준경비



-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부훈령 제454호, 2023.8.31. 일부개정]
- ❖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
[교육부예규 제59호, 2020.12.1. 일부개정]

가. 예비비

- 기준액(비율)

기준액(비율)	비 고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제1항

나. 일시차입금

- 기준액(비율)

기준액(비율)	비 고
예산 총액의 10% 이내	전년도 수준 유지

다. 채무부담행위액

- 기준액(비율)

기준액(비율)	비 고
예산 총액의 3% 이내	전년도 수준 유지



라. 지방채

○ 한도액

한도액	비 고
자율발행 가능지수×경상일반재원×10/100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 적용

※ 자율발행 가능지수 = $1 - ((\text{일반채무}^* + \text{BTL임차료} + \text{우발채무 총액의 50\%}) / \text{경상일반재원})$

* 일반채무(이자제외) = 지방채 +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이행책임 확정액의 잔액기준

※ 경상일반재원 = 교부금 + 법정이전수입 + 자체수입

※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해당 시·도교육청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시·도교육감이 정함

마.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

※ 여비, 업무추진비 및 교직원 복지지원 예산 사용 불가

- 기준액(비율)

2024년도	비 고
본예산액의 0.1% 이하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 4953, 2023.8.31.) 적용

바.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3조 관련

1)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 경비성격

- (기관운영) 시·도교육감과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 (사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및 각종시책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목적에 따라 사업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단, 기관운영 정책사업에 편성 금지)

○ 기준액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한도액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결정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한도액 기준

구 분	한도액 기준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기 ◦ 기타 시·도 ◦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규모의 0.09% 이내 ◦ 예산규모의 0.12% 이내 ◦ 예산규모의 0.31% 이내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도교육청(본청)은 3급(상당) 이상(다만, 기획관, 감사관 등 국장급 4급 보조·보좌 기관 포함 가능), 교육지원청은 4급(상당) 이상, 직속기관은 기관장 편성(본청 및 교육지원청 과장급 이하 편성 불가)

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경비성격 :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 직원 생일기념품,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단합행사·전통시장행사, 불우 공무원 지원 등 각 지방 교육행정기관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 적용대상 : 교육행정 및 지원기관(각급 학교* 제외)

* 단, 각급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의3제6항에 따라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의 교직원복지비 항목에 “학교 소속 교직원(교장 포함) 생일기념 소액경비(소액의 생일기념 케이크, 상품권 등)” 예산편성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인원기준 :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예산편성년도 10.1. 기준)

※ 단, 교육감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제근로자 등(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 기준액(1인당 연간금액)

정 원	100명까지	101~300명까지	301~600명까지	601~800명까지	801명이상
1인당 기준액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3)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 경비성격 :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 기준액

(단위 : 천원)

구 분	직 위	월 액	연 액	
정무직	시·도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감)	900 (1,025)	10,800 (12,300)	
	기 관 장			
일반직	시·도부교육감 (서울특별시부교육감)	700 (900)	8,400 (10,800)	
	부 기 관 장			
	1 급	750	9,000	
	보 조 기 관	700	8,400	
	2·3급	650	7,800	
	보 조 기 관	600	7,200	
	4 급	400	4,800	
	보 조 기 관	350	4,200	
	복 수 직	150	1,800	
	5 급	시·도교육청(본청) 과장	350	4,200
	기 관 장	150	1,800	
	보 조 기 관	100	1,200	
	6·7급	기 관 장	100	1,200
	보 조 기 관	50	600	
교 원	유·초·중등·특수학교장	250	3,000	

※ 교육전문직 기관장 및 보조기관은 일반직상당 직급으로 계상

- 주 1) 가산금 : 각급 학교의 학급가산금은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월 4,000원 가산 (병설 유치원 학급, 특수학급, 기타 정규학급으로 지정된 특별학급, 방송통신중·고 학급 및 분교 포함)
- 2) 시·도회의의 사무처에 근무하는 전문위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기준액 직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 3) 교육감, 부교육감 및 본청 3급 이상 실·국장은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4) 직제에 의한 보좌기관은 당해직급 보조기관 기준액을 적용한다.
-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무보직 4급은 월 15만원
- 6) 직제에 의한 기관 또는 조직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직급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 가능

4) 부서운영경비

- 경비성격 :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 가능)

* 부서 간담회·협의회 등 식대·간식비, 회의비, 접대용품 등 부서운영 제잡비

- 기준액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과 및 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담당관실

- 기관장이 4급 이하인 지방단일기관(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기관) :

1개과로 인정(예산편성년도 10.1. 기준)

구 분	기 준 액	비 고
정원 5인 이하 실·과	월 100,000원	
정원 10인 이하 실·과	월 175,000원	
정원 15인 이하 실·과	월 250,000원	
정원 20인 이하 실·과	월 300,000원	
정원 25인 이하 실·과	월 350,000원	
정원 30인 이하 실·과	월 400,000원	
정원 31인 이상 1인 초과시	월 5,000원 추가	

※ 교육감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약제근로자 등(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3.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 기준경비

-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275호, 2022. 8. 1., 일부개정]
- ❖ 우리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세출예산 편성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유지

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경비성격
 - 교육감과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 기준액(연간금액)

(단위 : 천원)

기관별	직위별	편성한도액	비고
본청	교육감	190,000	
	부교육감	95,000	
	기획조정실장	17,000	
	국장	14,000	
교육지원청	교육장	24,000	
	국장	4,000	
직속기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포함)	기관장	2, 3급	7,000
		4급	5,000
		5급	4,000

나. 특정업무경비

- 경비성격 :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 지급대상 : 지급 대상범위에 해당되는 직무 전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 지급인원 : 지급대상자 중 교육감이 정한 자
- 지급단가

(단위 : 월, 원)

구분	지급 대상자	지급액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 •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4급 이하) 	100,000 80,000
학생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청 및 교육지원청 학생수용계획 담당공무원(과장 이하) 	100,000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청 및 교육지원청 예산담당공무원(과장 이하) * 교육지원청은 과장 포함 3명 이내 	150,000
평생교육(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 본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80,000 60,000
학교보건 (교육환경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 본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80,000 60,000
교원·공무원· 학교회계직원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청 교원·공무원·학교회계직원단체 담당과장 • 본청 교원·공무원·학교회계직원단체 담당공무원(5급 이하) 	80,000 60,000
회계담당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청 복식부기, 본청 및 교육지원청 회계·계약 담당공무원 (5급 이하) 	60,000
여론·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청 여론·동향 전담공무원(5급 이하) 	100,000
법무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청 법무업무 담당과장 • 본청 법무업무 담당공무원(5급 이하) 	80,000 60,000

※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적용기준

-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인원은 직접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한하며, 특정업무경비 상호간에는 중복 지급할 수 없음
- 학생수용(학교설립), 복식부기 또는 회계·계약 담당공무원은 본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로 전담조직(과 또는 팀)이 설치된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담당(팀)제 등으로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동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담당급 이하)
-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은 본청 단위로 공보팀(계)이 설치된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담당(팀)제 등으로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동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담당급 이하)

다. 위원회참석수당

- 경비성격: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수당
- 지급단가(1일)

기본료	초과	비고
100,000원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상한액으로 지급

※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고 서면심사로 대신하는 경우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단, 심사내용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 가능)

- 지급 제외 대상

지급제외 대상

공무원*의 경우 자기 소관 사무(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교육청(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사무까지 포함)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급할 수 없음

* '공무원'이란 협의의 공무원(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를 포함

(단, 학교 소속 교직원이 교육청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임명·위촉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

지급제외 대상

예시

- 1) 본청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교육지원청 또는 직속기관 공무원(직원포함)이 참석했을 경우 : 지급 불가
- 2) 본청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학교 소속 공무원(직원포함)이 참석했을 경우 : 지급 가능
- 3) 교육지원청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학교 소속 공무원(직원포함)이 참석했을 경우 : 지급 가능

라. 심사수당 (심의·편집·운영수당 포함)

○ 지급단가(1일)

지급대상	지급액 (일급)		비 고
	기본료 (2시간 미만)	초 과	
교수, 전문가	80,000원	-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30,000원 - 4시간 이상 : 40,000원	*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공무원의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심사(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심사수당 지급
교장, 4급 상당 이상	60,000원	-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10,000원 - 4시간 이상 : 20,000원	
교감, 5급 상당,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 6급 이하, 일반인	40,000원		

※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심의·편집·운영·심판·점검·검토·개발·진행·컨설팅·모니터링·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상기 심사수당 지급기준 적용 가능

* **자기 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교육청(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사무까지 포함함. (단, 학교 소속 교직원이 교육청 심사(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지급 가능)

예시

- 1) 본청 소속 공무원이 직속기관 사무 심사(심의) → 심사수당 지급 불가
- 2)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본청 사무 심사(심의) → 심사수당 지급 불가
- 3) 학교 교직원이 교육지원청 사무 심사(심의) → 심사수당 지급 가능
- 4) 시청 소속 공무원이 교육청 본청 사무 심사(심의) → 심사수당 지급 가능
- 5)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경기도교육청 본청 사무 심사(심의) → 심사수당 지급 가능

※ 소속 사도교육청 밖에서 위원으로 심사(심의)한 경우에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임



마. 일·숙직수당

- 경비성격 :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 보상적 경비
- 기준액(1인기준)

구 분	단 위	단 가	계상일수	연 액
일 직 비	1일당	60,000원	116일	6,960,000원
숙 직 비	1야당	60,000원	365일	21,900,000원

- 계상원칙
 - 1) 동일건물에 2개 이상의 기관이 있는 경우는 통합 운영
 - 2) 직원 15인 이하인 기관은 1인 근무
 - 3) 수위실·기계실·보일러실 근무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않음

바. 합숙생활지도수당

- 계상원칙 : 대상학교별 2명
 ※ 단, 기숙사 학생수 300명 초과 시 2명 추가
- 기준일수 : 연 245일
- 지급단가 :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사. 시험수당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① 출제비	객관식	문제당	4,000원	* 감금수당은 연속 12시간 이상 감금 상태에서 문제 출제, 선정, 편집·편찬 및 관리를 담당할 경우에 한하되, 전체 감금시간을 24로 나눈 일수로 지급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주관식	과목당	50,000원	
② 채점비	객관식	10문제당	15원	
	주관식 (기본료) (초 과)	10부까지 부 당	30,000원 1,000원	
③ 문제선정·심의비		과목당	50,000원	
④ 문제편집, 편찬비		일 당	15,000원	
⑤ 시험 감독비 * 2018년도 인상	평 일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40,000원 50,000원	
	휴 일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50,000원 70,000원	
⑥ 면접, 실기 채점비 * 2018년도 인상	5급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50,000원 60,000원	
	6급 이하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40,000원 50,000원	
⑦ 감금수당		일 당	40,000원	

※ 시험검정사업의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을 고려하여 최대한 수지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별도의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각급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평가업무와 관련된 시험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아. 교육강사수당

- 경비성격 : 교육연수원 및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에 따른 외래강사의 수당
- 기준액(시간당)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 단가	비 고
특별강사1	◦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기본료 300,000원 초 과 200,000원	
특별강사2	◦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 특별강사1 이외의 3급 상당 이상 (전·현직공무원, 대학학장) ◦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기업체장 ◦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기본료 200,000원 초 과 150,000원	* 강사로 할증 · 101~200명 : 20%
일반강사1	◦ 대학 조교수 이상 ◦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 (이사급 이상) ◦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 문화·예술 등 특별 분야의 전문 강사 ◦ 4급(상당)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포함) ◦ 유·초·중등학교장 ◦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특별강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본료 160,000원 초 과 90,000원	· 201~300명 : 30% · 301명 이상 : 50% * 기본료는 1시간 미만
일반강사2	◦ 대학 강사 ◦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으로 일반강사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5급(상당)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포함)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 교사 및 6급 이하 공무원 ◦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1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본료 100,000원 초 과 60,000원	* 초과 강의 시간 산출 · 30분 미만 : 미포함 · 30분 이상 : 1시간으로 계산
분임지도	분임활동지도담당 외부 인사	기본료 30,000원 초 과 20,000원	
보조강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	기본료 30,000원 초 과 10,000원	

- ※ 연수전문기관(또는 조직관계 법령상 연수 시행 기관)은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본청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규정 적용 가능
- ※ 세미나, 심포지엄, 패넬토의(론) 기조연설자 및 주제 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참석시간을 기준으로 교육강사수당 기준 적용 가능
- ※ 원거리 강사 초빙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는 별도 지급 가능
- ※ 강사수당과 실비경비는 공무원, 민간인 구분 없이 운영수당(210-06)내 강사수당으로 통합 (210-06-05)
- ※ 소속 공무원(직원 포함)이 담당업무 또는 교수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초과근무 명령기관을 같이 하는 소속 공무원(직원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강사에게 강의 등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사례금(실비의 교통비 제외)은 같은 법 시행령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 ※ 온라인 실강의 강사료는 교육강사수당 기준액을 준용하여 지급 가능
- ※ 실강의 동영상 제작 등의 강사료는 강사료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 가능
- ※ 동일강사 중복출강 최초1시간 인정기준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자. 원 고 료

구 분		단 위	단가(원)
원 고	국 문 · 외국어	○ 매 (A4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mm, 상하여백 20mm, 좌우여백 25mm) * 강의 원고의 경우 시간당 3.5매 이내 * 원고지에 작성 시 A4용지 1매당 200자 원고지 4매 이내로 환산	14,000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자료	○ 면 * 강의 시간당 5면 이내 * 최대 20면까지 인정	10,000



차. 교원연구비

- 경비성격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따라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육연구비용
- 지급대상 : 유·초·중·특수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교원
- 기준액(월액)

(단위 : 원)

구분		유·초등 교원	중등교원	비고
교장		75,000	60,000	※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 준용
교감		65,000	60,000	
수석교사		60,000	60,000	
보직교사		60,000	60,000	
교사	5년 이상	60,000	60,000	
	5년 미만	75,000	75,000	

〈 참고 〉 2024년도 예산편성 기준단가

구 분	편성 기준 단가													
특근매식비	○ 단가 : 8,000원													
일·숙직비	○ 단가 : 60,000원													
여 비 (국내여비)	○ 단가 :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													
업무추진비	○ 단가 : 30,000원 이내													
급 량 비	○ 단가 : 8,000원 이내													
위 원 회 참 석 수 당	○ 단가 : 기본 100,000원, 초과 50,000원													
강사수당	○ 지급구분 : 특별강사 1·2, 일반강사 1·2, 분임지도, 보조강사 ○ 단가 : 교육강사수당 지급 기준액 참조													
동호회지원비	○ 적정 필요 경비													
심사수당 (심의·편집·운영 수당 포함)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지급액 (일급)</th> </tr> <tr> <th>기본료 (2시간 미만)</th> <th>초과</th> </tr> </thead> <tbody> <tr> <td>교수, 전문가</td> <td>80,000원</td> <td>-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30,000원 - 4시간 이상 : 40,000원 * 1일1회에 한하여 지급</td> </tr> <tr> <td>교장, 4급 상당 이상</td> <td>60,000원</td> <td rowspan="2">-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10,000원 - 4시간 이상 : 20,000원 * 1일1회에 한하여 지급</td> </tr> <tr> <td>교감, 5급 상당, 교사, 6급 이하, 장학(교육연구)사 일반인</td> <td>40,0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지급액 (일급)		기본료 (2시간 미만)	초과	교수, 전문가	80,000원	-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30,000원 - 4시간 이상 : 40,000원 * 1일1회에 한하여 지급	교장, 4급 상당 이상	60,000원	-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10,000원 - 4시간 이상 : 20,000원 * 1일1회에 한하여 지급	교감, 5급 상당, 교사, 6급 이하, 장학(교육연구)사 일반인	40,000원
	구 분		지급액 (일급)											
		기본료 (2시간 미만)	초과											
	교수, 전문가	80,000원	-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30,000원 - 4시간 이상 : 40,000원 * 1일1회에 한하여 지급											
교장, 4급 상당 이상	60,000원	-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10,000원 - 4시간 이상 : 20,000원 * 1일1회에 한하여 지급												
교감, 5급 상당, 교사, 6급 이하, 장학(교육연구)사 일반인	40,000원													



부 록

1.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2.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 [별표 1] 업무추진비 예산편성기준 (제3조 관련)
 - [별표 2]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제4조 관련)
 - [별표 3]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4]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제5조제2항 관련)
 - [별표 5] 세입·세출예산의 편제 (제6조 관련)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1.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2.8.1.] [교육부령 제275호, 2022.8.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 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 하기 위한 회계연도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은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2. 교육복지의 증진
3. 평생교육의 진흥
4.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 및 효율화
5.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시·도 교육감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도 교육감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산편성단위) 세입·세출예산서의 표기금액은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칸의 금액단위는 “원”으로 한다.

제2장 세입예산

제4조(자체수입) 시·도 교육감은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자산수입과 이자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의존재원) ① 시·도 교육감은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② 시·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교부금 산정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해당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채) 지방채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장 세출예산

제7조(경상적 경비)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시·도 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교육급여
3.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경비

제8조(기준경비)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시·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매년 8월 31일까지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업무추진비
3. 그 밖에 시·도 교육청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시·도 교육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제10조(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자주도
2.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부칙 <제275호, 2022.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행 2023. 8. 31.] [교육부훈령 제454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을 구분·설정하여 시·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전체의 재정적 통계 작성에 따른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기준경비)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이전수입, 자체수입, 차입, 기타,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장·관·항·목·원가통계목별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 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분류하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사업별로 설정·운영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별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세입·세출예산의 편제)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 포함되는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의 구성 및 형식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54호, 2023. 8.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기준 (제3조 관련)

1.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 (기관운영) 시·도교육감과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 (사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및 각종시책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목적에 따라 사업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단,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에 편성 금지)

② 기준액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한도액 기준 범위내에서 자율결정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한도액 기준

구 분	한도액 기준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기 ◦ 기타 시·도 ◦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규모의 0.09% 이내 ◦ 예산규모의 0.12% 이내 ◦ 예산규모의 0.31% 이내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도교육청(본청)은 3급(상당) 이상(다만, 기획관, 감사관 등 국장급 4급 보조·보좌기관 포함 가능), 교육지원청은 4급(상당) 이상, 직속기관은 기관장 편성(본청 및 교육지원청 과장급 이하 편성 불가)

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 직원 생일기념품,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단합행사·전통시장행사, 불우 공무원 지원 등 각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② 기준액(1인당 연간금액)

정원	100명까지	101~300명까지	301~600명까지	601~800명까지	801명이상
1인당 기준액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주] 1) 적용대상 : 교육행정 및 지원기관(각급 학교 제외)

* 단, 각급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30의3제6항에 따라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학교회계예산편성 지침의 교직원복지비 항목에 “학교 소속 교직원(교장 포함) 생일기념 소액경비(소액의 생일기념 케이크, 상품권 등)” 예산편성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적용기준 :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예산편성년도.10.1기준)

※ 단, 교육감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제근로자 등(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3.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① 경비성격

-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② 기준액

(단위 : 천원)

구분	직위	월액	연액	
정무직	시·도교육감	900	10,800	
	(서울특별시교육감)	(1,025)	(12,300)	
일반직	시·도부교육감	700	8,400	
	(서울특별시부교육감)	(900)	(10,800)	
	1급	750	9,000	
		보조기관	700	8,400
	2·3급	650	7,800	
		보조기관	600	7,200
	4급	400	4,800	
		보조기관	350	4,200
	5급	복수직	150	1,800
		시·도교육청(본청) 과장	350	4,200
	기관장	150	1,800	
	보조기관	100	1,200	
	6·7급	기관장	100	1,200
	보조기관	50	600	
교원	유·초·중등·특수학교장	250	3,000	

※ 교육전문직 기관장 및 보조기관은 일반직상당 직급으로 계상

- 주 1) 가산금 : 각급 학교의 학급가산금은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월 4,000원 가산 (병설 유치원 학급, 특수학급, 기타 정규학급으로 지정된 특별학급, 방송통신중·고 학급 및 분교 포함)
- 2) 시·도회의의 사무처에 근무하는 전문위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기준액 직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 3) 교육감, 부교육감 및 본청 3급 이상 실·국장은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4) 직제에 의한 보좌기관은 당해직급 보조기관 기준액을 적용한다.
-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보직 4급은 월 15만원 편성 가능
- 6) 직제에 의한 기관 또는 조직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직급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 가능

4. 부서운영경비

- ① 경비성격 :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 가능)

* 부서 간담회·협의회 등 식대·간식비, 회의비, 접대용품 등 부서운영 제잡비

② 기준액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 과 및 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담당관실
- 기관장이 4급이하인 지방단일기관(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기관) : 1개과로 인정(예산편성년도.10.1기준)

구 분	기 준 액	비 고
정원 5인 이하 실·과	월 100,000원	
정원 10인 이하 실·과	월 175,000원	
정원 15인 이하 실·과	월 250,000원	
정원 20인 이하 실·과	월 300,000원	
정원 25인 이하 실·과	월 350,000원	
정원 30인 이하 실·과	월 400,000원	
정원 31인 이상 1인 초과시	월 5,000원 추가	

※ 교육감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제근로자 등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5. 특정업무 경비

① 경비성격

-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② 기준액

-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결정하되, 업무의 성격이 적합하여야 하며, 전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 × 최근 3년간 당초 예산 평균 증가율의 1/2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 가능(다만, 현재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업무담당부서의 정원이 늘어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편성 가능)

※ (산출예시) 전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 2억원, 전년도 포함 최근 3년 당초예산 평균 증가율 10%인 경우 ⇒ (총액한도) = 2.1억원 (2억×(1+(10%/2)))

- 지급대상 및 지급액 결정은 과반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결정
- 지급 대상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로 전담조직(과 또는 팀)이 설치된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담당급 이하)에게 지급(단, 교육감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원의 직원도 적용 가능)
- 특정 업무 경비 상호간에는 중복 지급할 수 없음

별표 2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제4조 관련)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10000 이전수입			
1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111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101 보통교부금	보통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 의하여 통지된 보통교부금
	11102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 의하여 통지된 특별교부금
	11103 증액교부금	증액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4항에 의하여 통지된 증액교부금
11200 국고보조금			
	11201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사업으로 별도 통지된 금액
11400 특별회계전입금			
	11401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통지된 특별회계 전입금
12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100 법정이전수입			
	12101 지방교육세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입금	◦ 지방세법 제151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지방교육세 전입금 ◦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 “나” 목에 의한 지방교육세 보전에 총당하는 안분액 전입금
	지난연도지방교육세 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입금	◦ 지방교육세전입금의 지난연도 분(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방교육세전입금)
	12102 담배소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담배소비세 전입금
	지난연도담배소비세 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 담배소비세전입금의 지난연도 분(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담배소비세전입금)
	12103 시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시도세 전입금 ◦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제2항 제4호나목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전환사업(1단계 재정 분권) 보전금(2026년 12월 31까지 유효)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12103	시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제2항 제7호나목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전환사업(2단계 재정 분권) 보전금(2026년 12월 31까지 유효)
				지난연도시도세전입금	◦ 시도세전입금의 지난연도 분(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시도 세전입금)
		12104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부담금	학교용지매입비시도 부담금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부담금
				지난연도학교용지 매입비시도부담금	◦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의 지난연도 분(출납이 완결된 연도 에 속하는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12105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 “라” 목에 따라 산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12106	교육급여보조금	광역자치단체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와 제43조의2에 따라 광역자치 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기초자치단체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와 제43조의2에 따라 기초자치 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12107	무상교육경비전입금	광역자치단체무상 교육경비전입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기초자치단체무상 교육경비전입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12200	비법정이전수입		
		12201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광역공립공공도서관 운영비부담금	◦ 도서관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금
				광역급식비보조금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 경비(식품비, 연료비, 인건비 등)
				광역급식시설설비 사업보조금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시설 · 설비사업 경비
				광역교육정보화사업 보조금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경비
				광역교육과정자체 개발사업보조금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경비
				광역교육과정운영 사업보조금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경비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광역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립 사업 및 학교체육 진흥사업 경비
				광역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시설정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경비
				광역기반시설부담금	◦ 광역자치단체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기반 시설 부담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19호·제20호 및 제69조)
				기타광역자치단체보조금	◦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12202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부담금	◦ 도서관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금
				급식비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경비(식품비, 연료비, 인건비 등)
				급식시설설비사업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 경비
				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경비
				교육과정자체개발사업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경비
				교육과정운영사업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경비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립 사업 및 학교체육 진흥사업 경비
				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시설정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경비
				기반시설부담금	◦ 기초자치단체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기반 시설 부담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19호·제20호 및 제69조)
				기타보조금	◦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12203	국고지원전입금	국고지원전입금	◦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를 통하여 지원되는 전입금
		12204	기타지방교육세전입금	기타지방교육세전입금	◦ 지방세법 제151조제2항에 의한 지방교육세 탄력세율 적용으로 추가 확보되는 전입금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16000 기타이전수입			
			16100 민간이전수입			
			16101 기부금	일반기부금	◦ 일반 기부금(용도 미지정기부금)	
				특정기부금	◦ 연구목적 이외의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연구기부금	◦ 연구목적으로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민간부담금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학교신·증설과 관련하여 사업자 등에게 추가적으로 받는 기부금	
			16102 기타지원금	기타지원금	◦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수입 ◦ 기관, 협회 또는 단체들이 교육행정기관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정보화 촉진기금 등)	
			16103 기타협력사업비	기타협력사업비	◦ 시도교육청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 교육사랑카드 적립 협력사업비 등 민간과의 각종 협력사업에 따른 수입	
			16200 자치단체간이전수입			
			16201 전입금	전입금	◦ 자치단체 간 전입금	
			20000 자체수입			
			21000 교수학습활동수입			
			21100 기본적교육수입			
			21101 입학금	입학금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입학금 수입	
			21102 수업료	수업료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 수업료 수입	
			21103 지난연도입학금	지난연도입학금	◦ 지난연도 입학금 수입	
			21104 지난연도수업료	지난연도수업료	◦ 지난연도 수업료 수입	
			21200 선택적교육수입			
			21201 가숙사및급식	급식비	◦ 단체급식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가숙사비	◦ 가숙사 사용에 대하여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21204 평생학습수입	수강료수입	◦ 평생교육학습기관의 수강료 수입	
				기타평생학습수입	◦ 평생교육학습기관의 수강료를 제외한 수입	
			22000 행정활동수입			
			22100 사용료및수수료수입			
			22101 사용료수입	토지사용료수입	◦ 토지 및 임야 등에 대한 사용료 수입	

장	관	항	목	원기통계목	설 정		
				시설물사용료수입	◦ 시설물 사용료 수입(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운동장 등)		
				입장료수입	◦ 공연장, 과학관, 체험관 등의 시설물 입장료 수입		
				기타사용료수입	◦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사용료수입		
			22102	수수료수입	입학수험료	◦ 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에 의한 입학수험료 수입 및 전형료	
					검정수수료	◦ 자격검정 및 채용시험, 기타 검정시험 수수료수입	
					제증명수수료	◦ 제증명수수료수입	
					증지판매수입	◦ 수입증지 조례에 의한 증지판매수입	
					기타수수료	◦ 독촉수수료 등	
					22200 특별부과금및분담금		
					22201	특별부과금	특별부과금
			22202	분담금	분담금	◦ 지방자치법 제155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분담금을 계상 ◦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는 분담금	
			23000 자산수입				
			23100 자산임대수입				
			23101	임대료수입	토지임대수입	◦ 대지, 전, 답, 임야 등에 대한 임대수입(폐교부지, 구외부지, 정착물설치 위한 부지 등)	
					건물임대수입	◦ 건물에 대한 임대 수입(자판기·매점·복사기 설치 등을 위한 건물 임대)	
기타자산임대수입	◦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재산 임대 수입(물품 임대 포함)						
23200 자산매각대							
23201	토지매각	토지매각	◦ 토지(임야 등) 매각수입				
23202	건물매각	건물매각	◦ 건물 매각수입				
		건축물매각	◦ 공작물 매각수입				
23203	기계장치매각	기계장치매각	◦ 토지, 임야, 건물, 공작물을 제외한 기계요소공작기계, 산업기계, 의료화학분석기기, 물리시험측정기기, 기타실험장비, 기타잡기기 및 교육연구용 교구 매각수입				
23204	기타유형자산매각	전기통신기기매각	◦ 전기통신기기 매각수입				
		사무용기기및잡기매각	◦ 사무용기기, 사무용잡기 및 기타잡기비품매각수입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도서매각	◦ 도서 매각수입
				선박매각	◦ 선박 매각수입
				항공기매각	◦ 항공기 매각수입
				운반건설기계및차량매각	◦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매각수입
				박물관유물매각	◦ 박물관유물 매각수입
				입목매각	◦ 입목 매각수입
				기타의기타유형자산매각	◦ 기타의 기타유형자산 매각수입
		23205	무형자산매각	특허권매각	◦ 특허권 매각수입
				저작권매각	◦ 저작권 매각수입
				소프트웨어매각	◦ 소프트웨어 및 교육용 콘텐츠 매각수입
				실용신안권매각	◦ 실용신안권 매각수입
				의장(디자인)권매각	◦ 의장(디자인)권 매각수입
				상표권매각	◦ 상표권 매각수입
				상호권매각	◦ 상호권 매각수입
				전신전화보증금회수	◦ 무체재산에 포함된 전신전화 보증금에 대한 회수분
				기타무형자산매각	◦ 위 항목을 제외한 기타무형자산 매각수입
		24000	이자수입		
		24100	이자수입		
		24101	예금이자수입	정기예금이자	◦ 정기예금이자 수입
				기타예금이자	◦ 정기예금이자수입을 제외한 이자 수입 ◦ 세입세출외현금에서 발생한예금이자세입조치시이자수입을 포함 ◦ 기금회계에서 발생하는 예치금이자 수입
		24102	융자금이자수입	융자금이자수입	◦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7000	기타수입		
		27100	제재금수입		
		27101	변상금	공유재산변상금수입	◦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받거나 변상명령에 의한 공유재산 변상금 수입
				기타변상금수입	◦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받거나 변상명령에 의한 기타 변상금 수입

장	관	항	목	원기통계목	설 정
			27102 위약금	위약금수입	◦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
			27103 연체료	공유재산연체료수입	◦ 공유재산 연체료 수입
				기타연체료수입	◦ 기타 연체료 수입
			27104 과태료	과태료수입	◦ 법령 및 조례에 의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제23조 규정 등) 과태료 수입
			27105 기타제재금수입	기타제재금수입	◦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제재금 수입
			27200 기타수입등		
			27201 생산물매각대	생산물매각대	◦ 생산물 매각에 따른 수입
			27202 동식물매각대	동식물매각대	◦ 동식물 매각에 따른 수입
			27203 그외수입	그외수입	◦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
			27204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	학교회계전출금반납 금수입	◦ 회계연도 종료이후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등에 대한 사용잔액 반납금 수입(보조금 등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에 대한 지 난연도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은 보조금등반납금수입으로 처리)
			27205 보조금등반납금수입	보조금등반납금수입	◦ 회계연도 종료이후 지난연도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기타 지원금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에 대한 정산 반납금 수입(국가, 시도 등으로 반납하여야 할 전년연도 등 지난 연도 정산분에 대한 반납 금액)
			27300 지난연도수입		
			27301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수입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제외한 기타 지난연도 수입
			30000 차입		
			31000 지방채		
			31100 지방채		
			31101 지방채증권	장기지방채증권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지방채 증권 발행에 의한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
			31102 금융기관차입금	장기금융기관차입금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금융기관 에서 차입한 만기가 1년 이상의 장기 차입금)
			31103 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장기공공자금관리기 금차입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만기가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
			40000 기타		
			41000 전년도이월금		
			41100 순세계잉여금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41101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 지방회계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보조금 등 사용잔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지방회계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41200 보조금사용잔액			
			4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41202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광역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기초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41204 기타지원금사용잔액	기타지원금사용잔액		◦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기타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사용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
			41300 이월금			
			41301 전년도이월사업비	명시이월금		◦ 전년도에 이월된 명시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으로 관리
				사고이월금		◦ 전년도에 이월된 사고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으로 관리
				계속비이월금		◦ 전년도에 이월된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으로 관리
			42000 예치금회수			
			42100 예치금회수			
			42101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		◦ 기금회계에서 인식하는 기금운영상 여유자금운용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43000 금융자산회수			
			43100 용자금원금회수			
			43101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단기민간용자금		◦ 교육청이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및 기타 민간 부문에 대하여 빌려준 자금 회수
				장기민간용자금		
				학자 대여금		◦ 공무원자녀에 대한 학자대여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에 대한 회수액(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별도 계상)
			43300 보증금 회수			
			43301 보증금회수	단기임차보증금회수		◦ 단기 임차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장기임차보증금회수		◦ 장기 임차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단기기타보증금회수		◦ 단기 기타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장기기타보증금회수		◦ 장기 기타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50000 내부거래			
51000 전입금			
51100 전입금			
	51101 기금전입금	기금전입금	◦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1102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기금회계에서 인식하는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2000 예탁금및예수금			
52100 예수금수입			
	52101 예수금수입	예수금수입	◦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기금 상호간 예수금 수입
52200 예탁금회수			
	52201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예탁금원금회수수입	◦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기금 상호간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52202 예탁금이자수입	예탁금이자수입	◦ 예탁금에 대한 이자 수입

※ 교육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원가통계목명을 추가, 삭제할 수 있다.

별표 3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제5조제1항 관련)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050]교육		
				[051]유아및초중등교육		
				[01]인적자원운용		
				[03]교직원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지방공무원, 근로자 연수 등 공무원 및 근로자의 역량 강화 경비 	
				[01]교원연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연수 여비(국내·국외여비) 등 연수지원 경비 -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교원연수, 전문직연수, 교원국외 연수, 교원정보화연수 등 교원 장기 국외 유학연수 등 교원의 국외연수 경비 교원의 각종 연찬회 운영에 따른 제 경비(교장 및 전문직연찬회 등) 자율연수 연수원, 연구원, 정보원, 평생학습관 등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수 관련 제반 경비 - 교원자격연수, 교원직무연수, 교원사이버연수 등 	○
				[03]지방공무원연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 연수 여비(국내·국외여비) 등 연수지원 경비 관리자 장기국외연수 및 고급간부과정 국외연수 등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경비 직원능력개발비, 지방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제반 경비(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등) 지방공무원위탁교육과정 교육지원청 자체연수 지방공무원연찬회, 교육행정워크숍, 직장교육 등 연수원, 연구원, 정보원, 평생학습관 등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수 경비 - 지방공무원 일반연수, 지방공무원 사이버연수 등 	
				[04]근로자연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공무직원 등 공통연수 운영 경비 교육공무직원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자체 공통연수 및 워크숍 근로자 공통 위탁교육과정 ※ 급식위생교육 등 직종별 전문연수 경비는 해당 사업비로 편성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05]교직원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지방공무원, 근로자 인사관리에 필요한 경비 	
				[01]교원인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및 전문직 임용시험 관련 제반 경비 -초·중등 교원, 전문직 임용시험 관련 경비 사립교원 특별채용 및 인사교류 등 제반경비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시험 및 시험관리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 교원 훈·포장 전수식, 각종 표창, 행사 등 상훈관리 운영 교원초빙·공모제 운영비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제 경비 교원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교원 및 교육전문직 평정업무 운영 	○
				[03]순회교사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겸임순회교사, 보건교사및영양(교)사, 전문상담 및 특수교육 순회교사 등 순회여비 및 운영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 담당교원 수당 	
				[04]지방공무원인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제반 경비 -지방공무원 공채 및 특채, 승진시험 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 지방공무원 훈·포장 전수식, 각종 표창, 행사 등 상훈관리 운영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운영 	
				[05]근로자인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채용 및 인사관리 제반 경비 근로자 훈·포장 전수식, 각종 표창, 행사 등 상훈관리 운영 근로자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근로자 평정업무 운영 	
				[08]교직원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직원의 복지와 사기진작 경비 	
				[01]교직원복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동호회 운영 지원 경비 교직원 문화예술체육활동지원(체육대회, 스승의날, 예술제 등) 관련 경비 직장보육시설 운영 및 교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 위한 소요 경비 교직원 부조급여(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교직원(자녀 포함) 대여학자금 부담금 교직원 무이자·저리 대여사업 이차보전 ※ 공무원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 제외(공무원인건비에 편성)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02]교수학습활동지원		
				[01]교육과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운영 등 제반 경비 	
				[01]교육과정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개발, 연수, 홍보 및 각종 지원단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 제 경비 ◦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 제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교과운영 제 경비 - 과학교과(과학교육운영,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조성사업 등) - 체육교과(학교스포츠클ubs 인건비, 학교체육수업 운영 등) - 예술교과(학교예술교육과정운영,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사업 등) - 외국어교과(원어민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외국어 보조강사 운영, 캠프운영, 체험센터, 국제교류운영 등 학교 외국어 교육 관련 운영경비 등) ◦ 수준별 교육과정운영 제 경비 ◦ 대학교육 선 이수과정 운영 경비 ◦ 자유학기(년)제 운영 경비 ◦ 고교학점제 운영(공동교육과정운영, 연수 및 홍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및 선도지구 운영, 에듀테크활용교육, 교과특성화 학교 운영,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 등) ◦ 교과교실제 운영 경비(시설비 제외) ◦ 융합교육과정 운영 경비 ◦ 창의인성체험교육 운영 등 제 경비 ※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환경개선 및 시설확충비 등 시설비성 경비, 각종 기자재확충 경비는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세부사업에 편성 	○
				[03]교육자료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도서개발 보급에 필요한 제 경비 ◦ 우리고장 바로알기 교재, 사회과 지역 교과서 개발 보급 ◦ 무학년교과 수준별프로그램 개발 ◦ 각종 교육자료 개발 보급 경비 	
				[05]특색교육과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자체 특색학교 및 지역교육과정 운영 제 경비 (미래교육지구, 혁신학교, 행복학교, 국제학교 등) ◦ 기타 시도 자체 특색교육과정 운영 ◦ 컨설팅, 연수, 연구발표 등 ◦ 학교 1특색사업 운영 등 특색사업 운영관련 제 경비 	
				[06]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 시설 및 기자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실험실현대화 및 과학관 구축 · 운영 시설 및 기자재 구축 - 체육장비 구축,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학교운동장 조성포함) ◦ 고교학점제 운영 시설 및 기자재 구축 ◦ 교과교실운영 시설 및 기자재 구축(운영비 제외)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02]학력신장및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학력신장 제반 경비 ◦학습부진아 지도 방법 개선지원비 등 ◦기초학력진단평가 등 학생 학력평가 제반 경비 	
				[01]교실수업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수업개선 등을 위한 지원 경비 ◦교실수업개선 실천연구대회 및 학습지도연구대회 운영 경비 ◦수업분석실 운영 ◦우수교사인증제 운영 ◦연구대회운영지원 ◦수업선도교사 관리 운영 ◦수업방법 개선 등 특별연구교사 관리 운영 	
				[02]학력향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회복, 기초·기본학력 정착 위한 학습경비 ◦저소득층 학생 보충학습 운영 경비 ◦귀국학생 특별학습 운영 경비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재이수 등 운영경비 ◦각종 경진대회 및 경연대회 등 	○
				[03]학력평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시·도 자체, 시·도 연합 주관 학업성취도 평가운영 경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시·도 자체, 시·도 연합 주관 학력진단평가 운영 경비 ◦기타 학력인증평가 위한 운영 경비 	
				[03]장학및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초·중등 장학활동 지원 및 교과교육 연구운영·지원제반 경비 	
				[01]현장중심장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장학자료 개발, 보급 및 장학 관련 협의회 운영 ◦각종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제반 경비 ◦학교 단위 장학활동 공모제 운영 ◦ICT 활용교육 장학지원제 운영 ◦자율장학운영 및 컨설팅장학지원 ◦수석교사제 운영 -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수당을 제외한 수석교사 수당, 시간감축수당 등 수석교사 멘토링제 운영, 연찬회, 워크숍 경비 등 수석교사제 운영 관련 제 경비 	○
				[03]연구시범학교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 도·시·군 및 기타기관 연구시범학교 운영 ◦각종 연구 실험 시범학교 지원 및 운영 관련 제반 경비 	
				[04]교육연구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수연구지 및 학습우수사례 발간 ◦교육연구지 발간, 교육정보화 학술지 발간 ◦교육연구회 자료 개발·보급 ◦교사와 장학사 결연 활동 ◦자생적 연구활동 지원, 현장교육 연구활동 지원, 교과교육 연구회 운영 등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05]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경비 교수학습지원센터 포털사이트 운영 영상자료 제작 지원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06]유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반 운영 등 유아교육 지원 경비 	
				[01]유아교육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지원활동 지원 유아교육정보자료실운영, 교수학습자료개발 및 보급 유치원 학부모교실 운영 유치원 공동체험학습 운영, 지역별 유아교육네트워크 지원 교육자료 전시회 및 연찬회 운영 유치원 평가운영비 및 유치원 교원평가 유아교육활성화 추진 유아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및 관리(※ 직속기관인 경우 기본운영비는 기관기본운영비에 편성) ※ 사립유치원 제외 	
				[02]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방과후과정반 설치 및 운영 유치원 자원봉사자 등 운영 방과후과정반 환경개선비 유치원 돌봄 운영(아침·저녁) ※ 유치원 방과후과정반비 지원은 제외(누리과정지원에 편성) ※ 사립유치원 제외 	○
				[03]유치원교육여건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환경개선 지원, 실내외 놀이기구 시설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유치원 CCTV 설치 ※ 사립유치원 제외 	
				[04]사립유치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립유치원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확충 등 사립유치원 역량제고 사업 사립유치원 교육여건개선비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등 처우개선비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07]특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지원 및 관리 경비 	
				[01]특수교육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학급 운영 및 지원 경비 특수학급 증설(운영)비, 병원학교(급) 설치 운영 특수순회교육운 	○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01]특수교육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교재교구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 특수학교 전공과 지원 ◦ 특수학교 수준별 교재 제작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 ◦ 특수교육 각종대회 운영 지원 ◦ 장애인식개선 지원 	
				[03]특수교육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지원 ◦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 방과 후 교육지원 ◦ 공무원직 외 특수교육 지원 위한 사회복무요원 등 ◦ 장애재활센터 운영 	○
				[04]특수교육여건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급) 환경개선 ◦ 특수학급 신·증설 등(※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신·증설하는 리모델링비) ◦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 	
			[08]영재교육		◦ 영재교육 기관운영 및 추진에 필요 제반 경비	
			[01]영재교육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영재교실 및 영재학급(지역공동, 단위학교) 운영, 사이버 영재학급 추진 등 ◦ 영재교육 교수·학습자료, 판별도구 등 개발·확충 등 ◦ 영재교육 홍보 등 영재교육 업무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업 경비 ◦ 영재교육 연수 및 연구회 지원 ◦ 영재교육 협력사업 지원 ◦ 영재교육원 기본시설, 기자재확충, 운영비 등 지원 ◦ 과학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
			[09]독서교육		◦ 학교도서관활성화 등 독서교육활성화 경비	
			[01]독서논술교육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논술관련 자료집 발간 및 자료 제작, 독서동아리 및 연구회 지원 등 ◦ 각종 독서 관련 행사 지원 ◦ 전국 도서관대회 운영 등 ◦ 독서 논술 활성화 지원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02]학교도서관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비 지원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학교도서관 학부모 도우미 운영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 독서관련 자료집 발간 및 대화운영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추진 	
				[13]직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학교 운영 등 직업교육에 따른 제반 경비 	
				[01]직업교육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경기대회 운영 지원 등 학생 기능신장 지원 직업계고 실험실습비 지원 지역농수산과 운영 직업교육관련 각종 자료 발간 일반고직업교육과정 운영 마이스터고 육성 위한 제반 경비 직업계고 기숙사 운영비 지원 공동실습소 운영경비 직업교육 박람회 및 체험연수 등 	○
				[04]취업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계고 창업지원 사업, 학교기업 지원 직업계고 취업기능 강화사업, 해외인턴십 지원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비 지원, 현장실습 운영지원 등 산학협력 교육과정운영 지원, 산학협력 취업지원센터 운영 	○
				[05]직업교육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계고 체제개편 지원 및 학과개편 기자재 확충비 지원 직업계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여건개선 경비 공동실습소 기자재 확충 	
				[14]학교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용 컴퓨터 보급 등 학교정보화사업 제반 경비 ICT 활용교육 지원 제반경비 	
				[01]학교정보화여건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용·교원용 컴퓨터 보급, 컴퓨터실 확충 정품소프트웨어 및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보급 어학실 및 방송실 장비 확충 멀티미디어실 설치 첨단 광학매체 보급 인터넷 학습환경 구축 노후 기자재 수리 및 정비비 학내전산망 및 DB서버 구축 학내전산망 유지보수 학교홈페이지 관리 디지털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03]ICT 활용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 활용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ICT 활용교육경진대회 및 연구대회 학생컴퓨터활용인증제, 정보올림피아드 운영, 사이버마을 공부방 이러닝 박람회 및 이러닝 고도화 지원 IPTV 활용교육서비스 지원 클라우드 기반조성 스마트교육 지원 등 	
				[17]특별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중 특별활동지원 제반 경비 	
				[01]문화예술교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종합학예대회 및 발표회 관현악단 및 국악연주단 운영학교 지원 청소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박람회 운영 각종 현장체험학습(도시체험활동 등) 운영 학생동아리 지원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 지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03]각종체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스포츠클럽, 건강체력교실 운영 지원 각종 체육동호회 지원 생활체육 관련 지원 제 경비 체육선수 육성 지원, 체육특기자 선발 전문 체육코치 운영 특별종목 지원 연계 육성팀 창단 지원 신인발굴 및 전지훈련, 선수훈련용 버스 운영 전국, 시·도·군 단위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 	○
				[04]학생단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더십 배양 과정 및 특성화 수련프로그램 등 학생수련활동 운영 경비 야영장, 수련장, 학생교육원 등의 학생교육 지원 경비 청소년단체활동 지원 청소년 선도, 학생봉사 자치활동 지도 등 청소년활동 관련 제반 경비 	○
				[19]학생생활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 예방,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등 제반 경비 학생흡연 예방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 학생안전교육 제반 경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01]학생생활지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선도 등 학생생활 지도경비 ◦흡연예방교실 운영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 실천사례 발표대회 관련 제반 경비 ◦생활지도 관련 각종 연수 및 협의회, 대회 운영 등 제반 경비 ◦학생표창 등 학생생활지도 지원 관련 제 경비 	
				[02]성폭력예방교육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예방교육 관련 제 경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교육운영 관련 제 경비 	
				[03]학교폭력예방및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관련 제 경비 ◦초등학생 안심 알리미서비스 지원 ◦CCTV설치, 배움터지킴이,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
				[04]학생상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Wee센터 운영 ◦Wee클래스 운영 ◦학부모자원봉사자 운영 ◦전문상담기관 운영 등 학생상담활동 지원 	
				[05]학생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안전교육, 학교안전정책 운영 및 평가 ◦학생보호인력지원 ◦학교안전공제회비 ◦안전사고예방지도, 교통안전시설설치, 안전체험시설운영, 스킨존관리 등 학생안전관련 제 경비 	
			[20]대안교육		◦대안교육 운영 및 위탁 경비	
				[01]대안교육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안교육 운영 및 위탁교육비 지원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학교부청소년 복교 지원 관련 제 경비 	
			[22]진로진학교육		◦학생진로교육 등 진로진학교육 제반 경비	
				[01]진로진학교육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고학생 진로연계교육 관련 제 경비 ◦진로지도 자료 개발, 연수 등 진로지도 교육과정운영 관련 제 경비 ◦진로상담실 운영 ◦진학진로정보센터 운영 	○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25]학생선발배정	◦수학능력시험 및 입시관리 등 학생선발배정 경비	
				[01]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중학교 무시험 진학 관련 제반 경비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련 제반 경비 ◦학생 전·편입학 및 재입학 관리 업무 경비	
				[02]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대학수능모의평가관리	
			[03]교육복지			
				[01]학비지원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등 경비	
				[01]교육비지원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대상 외재학(원)하는 저소득층가정자녀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학비 지원 ◦기타 교육비 지원	
				[04] 교육급여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지원	
				[02]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돌봄 지원 제반 경비	
				[01]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제 경비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03]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경비	
				[04]돌봄교실운영	◦돌봄교실운영 지원	○
				[05]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농어촌 우수교 육성 등 교육여건 개선 제반 경비	
				[01]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농어촌우수교 육성 지원 사업 ◦농어촌 전원학교(돌봄학교 포함) 및 작은학교 육성 사업 ◦농어촌 적정규모학교 육성 교육여건개선 경비 ◦통합운영학교 프로그램 지원 ◦소규모학교군 구성 운영 등	
				[02]기숙형학교운영	◦기숙형학교 교육여건개선 경비 ◦기숙형학교 기숙사 운영 경비	
				[09]교육복지지원	◦정보화, 교과서 등 각종 교육복지 지원 사업비	
				[01]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경비	○
				[02]급식비지원	◦저소득층가정자녀 중식비 지원 등 학생에게 지원되는 급식비 지원금 ◦저소득층가정자녀 학기중 중식지원비 지원 ◦특수학생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가정자녀 학기중 등·공휴일 지원 등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03]정보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가정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유해사이트 차단경비 포함) 저소득층가정자녀 PC지원 저소득층가정자녀 IT교육 참가학생 경비 지원 	
				[04]누리과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세 누리과정 지원 경비(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과정 반비 등) 3~5세 누리과정 업무지원을 위한 제반 경비 	
				[05]교과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교육대상자(초·중·특수) 교과서 지급 경비 무상교육 고등학생 교과서 지원비 특수교육대상자(유치원, 고등학부 과정) 교과서 지원비 초등학교 영어 교과용 도서 구입 재량활동운영 교재 보급 	
				[06]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 자녀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 학생 등 특별반 운영 지원 경비 북한이탈학생지원 관련 운영 경비 	
				[07]기타교육복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교육복지 지원 사업비 	
			[04]보건급식			
			[01]보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환경위생관리 등 보건관리 제반 경비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원 경비 		
			[01]학교보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질검사 및 각종 건강검진 경비 학생 성인병 정밀 검사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학교보건교육자료 개발, 보건교사 연수 학교보건실 현대화 및 시설여건개선 관련 제 경비 		
			[02]학교환경위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환경보호활동 지원 등 학교교육환경보호 관련 경비 학교환경위생 연수 먹는물 시설 개선 지원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미세먼지 관리 		
			[03]산업안전보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안전 보건체제 운영 산업안전 보건 교육 운영 근로자 건강관리 운영 제 경비 		
			[02]급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식시설 개선, 기구 구입 등 급식관리 제반 경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01]학교급식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급식위생 지원 및 교육 경비 ◦학교급식관련 자료 발간 ◦학교급식관련 지도 및 점검 ◦급식담당자 협의회 운영 ◦학교급식 식품비, 운영비 및 관리비(무상급식비 포함) ◦학교급식 운영차량 지원 및 관리비 	
				[03]학교급식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 확충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급식시설 현대화 등 	
			[05]학교재정지원관리			
				[01]학교운영비지원	◦공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등 제반 경비	
				[01]학교운영비지원	◦공립학교 학교운영기본경비	
				[02]사학재정지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경비	
				[01]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학기관의 인건비 부족분 지원(맞춤형복지비 포함)	
				[02]운영비재정결함지원	◦사학기관의 운영비 부족분 지원	
			[06]학교시설여건개선			
				[01]학생배치시설	◦학교신설 등 학생배치시설 확충 경비	
				[01]학교신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급학교(유·초·중·고·특수, 대안학교)의 신축 및 이전 경비 ◦합중설학교(유·초·중·고·특, 대안학교) 부자매입비 및 시설비 등 ◦학교신증설 관련 자산취득비 	
				[02]학교시설개선	◦학교시설확충 및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01]학교시설확충	◦학생배치시설 이외 학교시설 증축 및 개축 관련 제 경비(부지매입비 및 자산취득비 포함)	
				[02]학교시설환경개선	◦학교시설 증축 및 개축을 제외한 학교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 제 경비(자산취득비 포함)	○
			[053]평생교육			
				[01]평생교육		
				[01]평생교육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경비 ◦방송통신중고 및 검정고시 운영 경비 	
				[01]평생교육시설및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학원 및 교습소 관리 ◦공익법인 관리 ◦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연수 등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02]평생학습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학습관 및 평생교육관 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경비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경비 장애인 문해교육 지원 교육이카데미 및 평생교육강좌 운영 평생학습도시 지원, 평생학습 축제 지원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 지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및 평생교육봉사단 운영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
				[03]방송통신중고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통신중고 운영 경비 	
				[04]검정고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경비 고등학교 입학 및 졸업 검정고시 경비 	
			[02]독서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등 독서문화진흥 제반 경비 		
			[01]도서관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자료확충, 도서관 전산화 추진 순회문고, 이동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 지원팀 순회운영 도서관 세미나, 아간개관 연장 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	
		[054]교육일반				
		[01]교육행정일반				
			[01]정책기획및비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업무계획추진 등 교육정책 기획관리 제반 경비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제반 경비 		
			[01]교육정책기획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업무 기획 및 보고 경비 공약사업관리, 교육감협의회 운영 각종 기획관련 자료 발간 교육정책 업무 추진 경비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교육정책지원단 운영 		
			[03]교육정책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시책 홍보활동 경비 공보 관련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교육관련 사진 촬영 및 관리 교육홍보간행물 발간, 교육홍보영상제작 등 경비 		
			[04]비상대비계획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직장민방위대 활동 및 운영 지원경비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에 필요한 경비 사회복무요원 운영(전산 및 특수교육 지원 사회복무요원은 해당사업에 편성)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03]감사법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감사활동지원 등 감사관리 제 경비 ◦ 소송 및 행정심판 등 법무관리 제 경비 	
				[01]감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감사활동 및 산하기관 감사 추진에 필요한 제반 경비 ◦ 국정감사 수감 관련 경비 ◦ 행정사무감사 수감 관련 경비 ◦ 반부패청렴추진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공직자재산등록 운영 	
				[02]법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정비 및 자치법규 관리 ◦ 법제 심의 및 각종 위원회 운영 경비 ◦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등 법무관리 제반 경비 ◦ 각종 배상금, 승소 포상금 및 사례금 ◦ 고문 변호사 운영 ◦ 교직원 법률상담 운영 	
				[04]기관평가및조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및 학교 평가 제반 경비 ◦ 혁신종합계획 추진 등 교육행정혁신 제반 경비 	
				[01]기관및학교평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 경비 ◦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평가 관련 경비 ◦ 학교 평가 관련 경비 ◦ 평가결과 지원금 	
				[02]조직및성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청 및 산하기관 조직관리,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를 위한 제반 경비 ◦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직무성과계약제 관련 제 경비 ◦ 목표관리제 운영, 분권이양업무 추진 	
				[03]행정개선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제반경비 ◦ 행정권한위임, 교원업무경감, 제안제도 등 행정운영 개선을 위한 제반 경비 ◦ 교육행정혁신, 학습동아리 운영 경비 	
				[07]의회협력및선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협력 지원 및 교육감 선거관리 제반 경비 	
				[01]의회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협력 지원 관련 제반 경비 	
				[02]선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선거에 필요한 경비 	
				[09]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운영 등 교육행정정보화 제반 경비 ◦ 교육통계연보 등 행정자료 관리 제반 경비 ◦ 민원실운영 등 민원행정서비스 제반 경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01]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경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에듀파인 등) 구축 및 관리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관리 전산실 운영 경비 행정(교육)전산망 구축 및 운영비 공무직원 외 전산업무 지원 위한 사회복지요원 등 PC정비소 운영 경비 	
				[02]정보보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안시스템 구축 및 관리 정보보호교육 및 운영관리 사이버테러대응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관리 	
				[03]교육행정기록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관 운영 기록물 관리 운영,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교육통계연보 발간 관련 제반 경비 교육행정자료 발간에 소요되는 제 경비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정보공시제 운영 	
				[04]민원행정서비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서비스 업무 추진 민원행정제도 개선에 필요한 제반 경비 민원만족도 조사 및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포상 행정서비스 한장 제도 민원실 운영 경비 	
				[13]예결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편성 등 예결산관리 제반 경비 	
				[01]예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편성, 배정, 자료 조사, 예산서인쇄 등 예산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 중기교육재정계획 수립 경비 재정 투자사업 심사 관련 경비 학교회계 업무 추진 관련 제반 경비 	
				[02]결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산관리에 소요되는 제 경비 	
				[14]재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재산관리 등 재무관리 제반 경비 	
				[01]재무회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비특별회계 지출업무 지원, 계약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업무 추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각종 회계업무 추진 경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02]공유재산및물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 재산 등기, 측량, 감정수수료 등 공유재산관리 경비 ◦ 자산취득·매각 관리, 각 부서 자산취득 경비 ◦ 물품수급관리 등 제 경비 	
				[15]학생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배치계획 추진 관련 제반 경비(※ 시설비 및 학교신증설 자산취득비는 학생배치시설에 편성) 	
				[01]학생배치계획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배치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 개발지구 학교신설 추진 경비 ◦ 통학구역 관리 	
				[02]적정규모학교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이전 및 분교장 개편 업무 추진 ◦ 학교 통·폐합 추진 경비 ◦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16]사학기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 경영평가 등 사학기관지도 육성 제반 경비 	
				[01]사학기관지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법인 지도·감독 경비 ◦ 사학직원 연수 경비 ◦ 사학기관 행정지도 및 시설지원사업 지도 감독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17]교육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국제교류 등 교육협력 사업비 	
				[01]학부모및주민참여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제반 경비 ◦ 학교발전기금 및 기부금품 지도·감독 경비 ◦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활동 경비 지원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관련 제반 경비 	○
				[02]교육협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청 및 유관기관 교육협력 제반 경비 ◦ 교육기부활성화 사업 등 제 경비 	
				[03]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도상국 PC지원 및 초청 연수 등 ◦ 국외단체와의 자매결연 경비 ◦ 교육교류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18]시설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유치사업관리 등 시설사업관리 제반 경비 	
				[01]시설사업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 시설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20]특별교육재정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 	
				[01]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 ◦ 로써 본예산액의 0.1% 이하로 편성 ※ 여비, 업무추진비 및 교직원 복지지원 예산 사용 불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21]교직원단체관리	◦교원·지방공무원·근로자 단체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	
				[01]교직원단체관리	◦교원, 지방공무원 및 근로자 단체 관리에 필요한 경비 ◦교직원 노사관계 교육관련 경비 ◦교원, 공무원, 근로자 단체교섭 및 협약추진 경비	○
				[02]기관운영		
				[01]기본운영비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기본운영비	
				[01]기관기본운영비	◦본청 운영 관련 경비 ◦교육지원청 운영 관련 경비(※ 교육지원청 소속 직속기관 포함) ◦직속기관 운영 관련 경비	
				[02]교육행정기관시설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시설비	
				[01]기관시설유지관리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시설유지보수, 환경개선, 신설, 이전 및 증·개축비	
				[03]재무활동		
				[01]지방채상환및리스크	◦지방채, 민간투자사업 상환 등 제반 경비	
				[01]지방채상환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	
				[02]민간투자사업상환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03]일시차입금관리	◦일시차입금 이자	
				[04]내부거래지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탁금, 예수금 원리금 상황	
				[01]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기금회계에서 인식하는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02]기금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교육청이 설치·운영·관리하는 기금으로의 전출금	
				[03]예탁금	◦여유자금 운용 등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기금 상호 간 예탁하는 자금	
				[04]예수금원리금상환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기금 상호간 가져온 자금의 원리금 상황	
				[05]예치금	◦예치금	
				[01]예치금	◦기금회계에서 인식하는 기금운영상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금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160]예비비						
[161]예비비						
[01]예비비및기타						
[01]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및 기타		
[01]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02]제지출금등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반환금 등		
[03]내부유보금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900]기타						
[901]인건비						
[01]인건비						
[01]공무원인건비				◦교원인건비 등 공무원 인건비		
[01]교원인건비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기타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 등의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맞춤형복지비, 급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공무원 법정부담금), 성과상여금 등		
[02]지방공무원인건비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행정지원기관 소속 일반직, 별정직 등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맞춤형복지비, 급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공무원 법정부담금), 성과상여금 등		
[03]교육전문직원인건비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직급보조비, 맞춤형복지비, 급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공무원 법정부담금), 성과상여금 등		
[02]근로자인건비				◦계약제교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건비		
[01]계약제교원인건비				◦기간제교사, 시간제강사 등 인건비 ◦계약제 및 시간제 교원 인건비, 퇴직수당 등 ※ 인턴교사 등 사업성 경비는 해당 세부사업에 설정		
[02]계약제근로자인건비				◦지방공무원 출산후가 등 행정대체 인력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장애인고용부담금 ◦공공기관 근무 인턴 인건비		
[03]교육공무직원인건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처우개선비,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등 포함) ※ 교육공무직원 대체 인건비 포함 ※ 교육공무직원이 아닌 사업성 인건비는 해당 세부사업에 설정		

별표 4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제5조제2항 관련)

목 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100	인건비			
	110	인건비		
		110-01 보수	봉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급(고정급 및 성과급 적용 연봉월액 포함)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및 제32조에 의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봉급
			겸임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의한 겸임수당
			정근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대우공무원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제수당
			창안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연구업무수당	
			교육연수기관근무수당	
			교원보전수당	
			교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1)	
			교직수당가산금2)	
			교직수당가산금3)	
			교직수당가산금4)	

목 그룹	목	세목	원기통계목명	설 정
			교직수당가산금5)	
			교직수당가산금6)	
			교직수당가산금7)	
			교직수당가산금8)	
			교직수당가산금9)	
			교직수당가산금10)	
			선박및함정근무수당	
			국제전문직위수당	
			의료업무등의수당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모범공무원수당	
			봉급조정수당	
			명예퇴직수당	
			장려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수직무수당	
			개방형직위등보전및 전문직위수당	
			직급보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급보조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비
	110-03 기간제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이 아닌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인부임(일용 근로자)

목 그룹	목	세목	원기통계목명	설 정
		110-04 공무직보수	공무직인건비	◦ 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인건비
		110-05 계약직교원보수	계약직교원인건비	◦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및 전임강사 인건비,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200 물건비				
	210 운영비			
		210-01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용품 구입비: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인쇄비 및 유인물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품구입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 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관서)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 소모성 물품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소모성 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430-01)목에 계상 ◦ 비품·소규모 수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전산기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간행물 등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는 자산취득비(430-01)목에 계상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실·보건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 공상치료비 등 ◦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무형자산성 프로그램의 소유권 취득은 무형자산(440-01)목에 계상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

목 그룹	목	세목	원기통계목명	설 정
			각종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료 및 광고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의식비 제외)와 견본비 ※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당해 물품·용역의 구입에 계상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토지·건물 평가 등의 감정료, 수질검사시험·콘크리트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외자조작비,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 철도요금으로 지불되는 화물 운송료는 210-02목에 계상 -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수임료 및 회계감사, 세무조정 등 자문료 - 속기료, 원고료, 번역료, 측량수수료 등 각종 소규모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적인 수수료 - 세입금 등 수납을 위해 신용카드 납부시 교육청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
			교육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위탁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 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 교육에 따른 경비 ◦ 공로연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로연수로 파견된 공무원의 국내 또는 해외연수비 -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의 배우자에 대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경비
		210-02 공공요금및제세	전화요금	◦ 전화요금(전보료 포함)
			인터넷통신요금	◦ 인터넷통신요금
			전기요금	◦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 도시가스료
			기타공공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요금 ◦ 철도화물운송요금 ◦ 위성방송, 유선방송수신료 ◦ 상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공공요금
			보험료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보험료(자동차, 화재보증,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공무원책임보험료 등)

목 그룹	목	세목	원기통계목명	설 정
			자동차세	◦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기타제세	◦ 오물수거료 ◦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체당금 ◦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담하는 제세 및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의 부담금 - 소방기본법 제42조의 소방안전협회비 ◦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ESCO)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 건물임대 수익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액 ◦ 상기 항목 나열되지 않은 기타 제세
	210-03	피복비	피복비	◦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작업복 포함) 피복비 - 업무 성격상 제복 또는 작업복 착용이 불가피한 직접 업무 담당자(무기계약근로자 포함) 대상 ◦ 교육·훈련기관에서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피복비 및 민간인에게 대여하는 피복비 ◦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210-04	급량비	급량비	◦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① 주식비 ② 부식비 ③ 후식비(우유 및 음료 등) ④ 합숙인 경우에는 상기(①~③)이외에 숙박비를 포함 ⑤ 1항에서부터 4항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보관비 및 공교료) ⑥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연료비 등) ⑦ 주·부식물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소모성 도구 구입비 ※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워크숍, 연찬회, 연수, 회의 등 행사성 식비는 230목에 계상) ◦ 수련원, 연수원 등에서 학생(연수생)에게 급여하는 상기 ①부터 ⑦까지의 경비
	210-05	특근매식비	특근매식비	◦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매식비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각종 시험출제 합숙(입소) 등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의 매식비

목 그룹	목	세목	원기통계목명	설 정
	210-06 운영수당		위원회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참석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 수당 - 법령, 조례 등에 수당 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 위원회 참석 시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지급 경비 ◦ 심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투자심사 등)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숙직비	◦ 일 · 숙직비
			시험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 단,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 중 당해기관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및 문제선정, 감시, 문제편집 · 편찬을 하는 경우는 지급제외 - 출제 및 심사수당 등
			강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직장교육(자체교육 포함) 외래강사료(원고료 포함)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직장교육(자체교육 포함) 외래강사 교통비 및 숙박비 등 실비지급 경비 ※ 강의를 병행하는 강사원고료가 아닌 책자 제작 등의 속기 · 원고료는 일반수용비(210-01)에 편성
			기타운영수당	◦ 상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운영수당
	210-07 임차료		토지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임차료
			시설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에 의한 건물임차료(일시 임차료 포함) ◦ 물건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통학차량임차료	◦ 통학차량임차료
			통학차량외임차료	◦ 행정기관 차량임차 포함
			기타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에 의한 장비, 물품, 사무기기, 집기, 교구 · 기자재 등 임차료 ◦ 기타 자산 임차료
	210-08 연료비		냉난방기연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난방용 LPG 및 유류 ※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난방 연료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에 계상

목 그룹	목	세목	원기통계목명	설 정
		210-09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비유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목재, 석탄, 폐지 등 유류 이외의 연료구입비 포함)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기타 차량·비행기·선박 등 운반구 유지비 ※ 동력장치, 중장비, 운반구 등의 가동을 위한 유류의 구입비는 차량 선박비(210-10)목에 계상 - 1년 미만의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1년 이상의 시설장비유지관리 용역은 용역사업비(210-13)목에 계상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420-03)목에 계상
		210-10 차량선박비	차량선박유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및 선박, 항공기의 유류대
			차량선박소규모 수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및 선박, 항공기의 소규모 수선비(운반 건설 기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선비는 시설비(420-03)목에 계상 ◦ 차량 및 선박, 항공기에 대한 소모품비
		210-11 재료비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물품(소모성물품은 제외)은 자산취득비(430-01)목에,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 등은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에 계상 ◦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 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성기구비품비로 구분) ◦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 사료구입비 ◦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방역 재료비
		210-12 교육운영비	교과서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지원에 따른 학생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구입비
			기타교육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산하기관을 위한 교재교구 수선 비용 등 ◦ 교육청(직속, 지원청)이 주관하는 학생 대상 교육·세미나·회의·행사·대회출전 등에 참석·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한 매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기타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실비 변동적인 경비

목 그룹	목	세목	원기통계목명	설 정
		210-13 용역사업비	관리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개별법령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치 단체가 시행해야 할 주요사무를 외부에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 위탁금(320-02)목으로 계상하고, 유지관리업무가 아닌 행사 등 일반 업무에 대한 대행 용역은 일반용역비에 계상
			일반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 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법률적 의미의 민간위탁과 법정대행, 정책개발 및 그 외 일반 조사 연구, 장비·시설물 등의 유지보수관리가 아닌 기타 업무의 대행을 위한 용역비
		210-14 민자사업운영비	BTL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BTL운영비
		210-15 기타일반수용비	기타일반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일반수용비
			부서운영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압비
	220 여비			
	220-01 국내여비	공무원출장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여비규정 및 조례에 의한 공무원 출장여비 	
		비공무원출장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이 아닌 자의 출장여비 	
		이전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220-02 국외여비	국외출장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의 해외 출장여비 	
	220-03 외빈초청여비	외빈초청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빈초청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연회비, 선물비, 환송연 행사 등 기타 부대 경비는 업무추진비에 계상 	
	220-04 국외훈련여비	국외훈련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 항공료, 체제비, 학자금 등 	
	220-05 국내훈련여비	국내훈련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위탁 교육 등) 국내훈련여비 	
	230 업무추진비			
	230-01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기관운영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급기관의 조직운영과 홍보,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 경비 체육대회, 중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목 그룹	목	세목	원기통계목명	설 정	
	230-02 사업추진업무 추진비		사업추진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각종시책사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례회의 경비, 각종 행사경비 - 해외출장 지원경비, 대회출전각종 격려금 등 ◦ 피해학생 학부모 격려,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외빈초청경비	◦ 외빈초청경비 중 연회비/선물비/행사·접대경비	
			기타업무추진비	◦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업무추진비	
	230-03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정원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원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 	
	240 복리후생비				
	240-01 교직원 복리후생비		교직원학술연구지원비	◦ 교직원 학술·연구모임 지원경비	
			동호회지원비	◦ 교직원 동호회 지원경비	
			직원능력개발비	◦ 교직원 능력 개발비	
			순회교사및복식수업 수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 담당 교사 수당	
			기타복리후생비	◦ 교직원 기타 복리후생비	
	240-02 맞춤형복지비		맞춤형복지비	◦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맞춤형복지비(학교로 전출할 경우 620-07)	
			사립맞춤형복지비	◦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근로자 포함) 맞춤형복지비(학교로 전출할 경우 620-14)	
			근로자맞춤형복지비	◦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 맞춤형복지비(학교로 전출할 경우 620-07)	
240-03 사립유치원처우 개선비		담임수당지원	◦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 담임수당		
		교직수당지원	◦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 교직수당		
		기타수당지원	◦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 기타수당		
240-04 교원연구비		교원연구비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교원 연구비		

목 그룹	목	세목	원기통계목명	설 정
	250	직무수행경비		
		250-02 직책급업무수행 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직위별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50-03 특정업무경비	특정업무경비	◦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50-04 기타직무수행 경비	감사활동비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한 경비
			관재활동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도 조례, 규칙 및 지침 등으로 정한 관재활동비
	260	연구개발비		
		260-01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 교육청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 경비
			전산개발비	◦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감리비 포함)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280-01 경상교육지원 사업비	경상교육지원사업비	◦ 교육행정기관과 지원기관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행사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각급 학교에 직접 지원할 경우 학교특별교육지원비(620-06) 및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620-13)목에 계상)
	300	이전지출		
	310	보전금		
		310-01 사회보장적 수혜금(국고보조 재원등)	사회보장적수혜금	◦ 법령이나 국가 지침에 의하여 저소득층학생 등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 보장적 수혜금 및 물품, 보철구 제작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의 교육급여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의 교육 비지원(정보화지원비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 특수교육관련서비스 -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310-04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체 사회보장적수혜금

목 그룹	목	세목	원기통계목명	설 정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예산편성 시 협의절차 이행여부 확인)
		310-05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 병역법 제31조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310-06 기타보전금	장학금및학자금	◦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민간인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 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장려금, 상금 및 보상금 ◦ 현업관서에서 업무수행중 제반사고로 인한 민간인에 대한 부상 치료비	
	행사실비지원금		◦ 교육, 회의, 세미나, 행사에 참가하는 학부모 등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매식비 및 교통 실비 ◦ 국가, 시도교육청 등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행사 참석을 위해 학부모 등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단체적 일괄적 실비 보상적 경비 ◦ 체육행사, 세미나, 공청회, 문화제행사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310-02 배상금등	배상금등	◦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에 의하여 보전 하여야 할 보상금(징발보상금) ◦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보상금
		310-03 포상금등	포상금등	◦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 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금 ◦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 파견 공무원의 학자금 등 업무관련 해외기관 위탁에 따른 제비용 ◦ 예산 성과금 ◦ 기타 포상금 - 교육행정기관 주관 각종 교육 및 교육행정 성과의 제고를 위한 평가 및 경시대회 등 추진에 따른 포상금(직원의 사기진작 등 기관 운영을 위한 사업의 경우 업무추진비에 편성하고, 기관포상의 경우 포상계 획 수립 시 포상금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침을 설정하여 소모적이고 비교육적 집행을 지양)

목 그룹	목	세목	원기통계목명	설 정
	320	민간이전		
	320-01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은 620목에 편성)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경상보조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경상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원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320-02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위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이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 전액 회수하는 제 사업비 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320-14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보조에 편성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자본보조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자본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원하는 자본적 보조금
	320-03	공무원법정부담금	공무원법정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부담금(연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320-05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법정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부담금 및 부상치료비 건강보험부담금 등 법령에 의한 기타 경비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목 그룹	목	세목	원기통계목명	설 정
		320-06 보험료부담금	보험료부담금	◦ 민간이 부담하는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보험료 지원비)
			학교안전공제회비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1조에 따른 학교 안전공제회비(교육부장관이 제4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단가)
		320-07 이차보전금	이차보전금	◦ 특정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경비 (환차손 포함)
		320-08 민간대행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 교육청이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함) ◦ 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함)
		320-09 기타민간용자금	단기민간용자금	◦ 교육청이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부문에 대하여 1년 미만으로 빌려주는 자금
	장기민간용자금		◦ 교육청이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부문에 대하여 1년 이상 빌려주는 자금	
	학자대여금		◦ 공무원자녀에 대한 대여장학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	
	단기임차보증금		◦ 1년 미만에 회수할 임차 보증금	
	장기임차보증금		◦ 1년 이후에 회수할 임차 보증금	
		320-10 연금부담금	사망조위금	◦ 교직원 본인 및 가족 사망조위금
	재난부조금		◦ 교직원 재난부조금	
		320-11 학생및학생단체 지원경비	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	◦ 아람단, 누리단 등 청소년 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금
	학생치료비		◦ 학생치료비	
		320-12 공무직법정 부담금	공무직법정부담금	◦ 공무직에 대한 법정부담금 - 국민연금부담금 및 부상치료비 - 건강보험부담금 - 고용보험료 - 산업재해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목 그룹	목	세목	원기통계목명	설 정
		320-13 계약직교원법정 부담금	계약직교원법정 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직교원(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및 전임강사, 운동부지도자 등) 대한 법정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부담금 및 부상치료비 - 건강보험부담금 - 고용보험료 - 산업재해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330 자치단체등이전			
		330-01 자치단체경상 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에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보조 ◦ 교육청에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민간에 교부하는 보조금 중 자본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 ◦ 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치단체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보조(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경비)
		330-02 자치단체자본 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에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 교육청에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330-03 자치단체대행 사업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이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시설물의 건설 및 대규모 수선 등 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함) ◦ 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치단체에게 지급하는 경비(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함)
		330-04 자치단체보육료 보조	누리과정보육료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3세~5세 어린이집 원아에게 지원하는 자치단체 보육료 보조경비
		330-05 공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 사업비	공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이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공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제외)
		330-06 공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위탁 사업비	공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이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공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 한국교육개발원 운영비 부담금(방송통신중 및 방송통신고)

목 그룹	목	세목	원기통계목명	설 정
		330-07 자치단체간부담금	자치단체간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또는 조례, 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등한 자치단체 상호간 부담하는 경비 교육청이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법령 또는 조례, 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에 대행 또는 위탁 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법령·조례 등에 따른 시·도교육청 간 분담금사업(교육청 간 예산의 이전) 경비
		330-08 기타부담금	기타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등에 따라 국가에 부담해야 할 경비 공직선거법 제2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하는 교육감선거관리경비(선거관리경비규칙 제2조제4호의 공통경비 포함)
	340 해외이전			
		340-01 해외경상이전	해외경상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경비
		340-02 국제부담금	국제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구,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및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
	350 출연금			
		350-01 출연금	출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개별 법령의 출연 근거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조례로 정하는 교육청의 출연금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 필요)
	400 자본지출			
	410 토지매입비			
		410-01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
			토지보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이농비, 실업비 등)에 대한 보상비
			토지매입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목 그룹	목	세목	원기통계목명	설 정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타토지비용	◦ 토지 취득 후에 들어가는 기타 비용 등(정지비 제외)	
	420 건설비				
	420-01 기본조사설계비		사전조사비용	◦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 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기본설계비	◦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 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420-02 실시설계비		실시설계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 완료 후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시설계에 착수 - 실시설계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안됨 ※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해야함	
			420-03 시설비	건물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건축물 시설비 (대규모수선유지비 포함)
				토목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토목 시설비
				전기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전기 시설비
				정보통신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정보·통신 시설비
				소방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소방 시설비
				기계설비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계설비 시설비
				위생설비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위생설비 시설비
				건축물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건축물 시설비
조경공사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조경공사 시설비	
선박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선박 시설비	
항공기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항공기 시설비	
도장공사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도장공사 시설비	
부지정지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부지정지 시설비				

목 그룹	목	세목	원기통계목명	설 정
			자산철거비	◦ 노후건물 철거 등 자산 철거비
			기타자산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타자산 시설비
			문화재발굴경비	◦ 시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화재 발굴 경비로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소요 경비
			시설안전진단및정밀 점검경비	◦ 건축물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경비
		420-04 감리비	감리비	◦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구역에 소요되는 경비 ※ 기존자산의 가치 증대 및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지출은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
		420-05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용 1. 시설, 대수선, 재산취득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가. 공사시공 계획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나.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 수수료 다. 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 (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라.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의 수용비 및 수수료 마.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바.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사. 공사과정 발생한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 도로굴착시 인접 민간건물 손상, 공사현장 인접 농작물 피해,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등 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 학부모참여감독관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자산 증가를 조성하는 물품 구입 및 시설은 해당 비목에 편성 ※ 당해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경비·물품검수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 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 할 수 없음 ※ 시설부대비는 기준요율에 의한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

목 그룹	목	세목	원기통계목명	설 정
	430	유형자산		
		430-01	취득비	
			건물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건물 취득비
			건축물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건축물 취득비
			기계장치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계장치 취득비
			입목죽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입목죽 취득비
			선박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선박 취득비
			항공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항공기 취득비
			운반건설기계및차량 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운반건설기계및차량 취득비
			전기통신기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전기통신기기 취득비
			사무용기기및집기 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복사기 등 행정사무기기 및 집기 취득비
			기계요소및공작기계 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계요소 및 공작기계 취득비
			산업기계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산업기계 취득비
			의료및화학분석기기 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의료 및 화학분석기기 취득비
			물리시험측정기기 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물리시험측정기기 취득비
			기타실험장비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타실험장비 취득비
			기타잡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타잡기 취득비
			도서취득비	◦ 학교도서관 및 도서실, 기록관 등의 자본 형성적 도서 구입비
			문화유산자산취득비	◦ 박물관유물 유상 취득비
			예술품취득비	◦ 박물관 유물이 아닌 예술품 취득비
			기타유형자산취득비	◦ 위 항목에 나열되지 않은 자산 취득비
			교구용기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교구용기기 취득비

목 그룹	목	세목	원기통계목명	설 정
	440	무형자산		
		440-01 무형자산	특허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자산 취득비 - 기타 통신시설 가입권 - 법률상의 권리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 -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 광산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법률상의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 영업권
			저작권	◦ 저작권 취득비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및 교육용컨텐츠 취득비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권 취득비
			의장(디자인)권	◦ 의장(디자인)권 취득비
			상표권	◦ 상표권 취득비
			상호권	◦ 상호권 취득비
			기타무형자산취득비	◦ 기타무형자산 취득비
	47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470-01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투자교육지원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행정기관과 지원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자본형성적 사업지원비(각급학교에 직접 지원할 경우 학교특별교육지원비(620-06) 및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620-13) 목에 계상)
	500	상환지출		
		510 상환지출		
		510-01 차입금상환	유동성장기지방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성장기지방채 증권의 상환 ※ 유동성장기지방채는 최초 차입 당시에는 장기지방채였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환기일이 1년 내에 도래하는 장기지방채를 말함
			장기지방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지방채 증권의 상환 ※ 장기지방채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지방채증권발행에 의한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을 말함
			유동성장기금융기관 차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의 상환 ※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은 최초 차입 당시에는 장기차입금이었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환기일이 1년 내에 도래하는 장기금융기관차입금을 말함

목 그룹	목	세목	원기통계목명	설 정
			장기금융기관차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유동성대체하지 아니한 장기금융기관 차입금의 조기상환) ※ 장기금융차입금이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만기가 1년 이상의 장기 차입금)을 말함
			유동성장기공공자금 관리기금차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성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의 상환 ※ 유동성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은 최초 차입 당시에는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이었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환기일이 1년 내에 도래하는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말함
			장기공공자금관리기 금차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의 상환 ※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이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만기가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을 말함
			금융리스채무	◦ 금융리스 채무 차입금 상환
	510-02 차입금이자		유동성장기지방채증 권이자비용	◦ 장기지방채 중 차년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지방채 증권의 이자비용
			장기지방채증권이자 비용	◦ 지방채 증권 발행으로 인한 이자비용
			유동성장기금융기관 차입금이자비용	◦ 유동성 장기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비용
			장기금융기관차입금 이자비용	◦ 장기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비용
			유동성장기공공자금 관리기금차입금이자 비용	◦ 유동성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이자비용
			장기공공자금관리기 금차입금이자비용	◦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이자비용
			금융리스채무이자비용	◦ 금융리스채무 이자비용
			일시차입금이자비용	◦ 지방회계법 제24조에 의거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510-03 민자사업자금		BTL원금	◦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원금보상
			BTL이자	◦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이자

목 그룹	목	세목	원기통계목명	설 정
	520	예치금		
		520-01 예치금	예치금	◦ 기금회계에서 인식하는 기금운영상 여유자금운용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금
600	전출금등			
	610	전출금등		
		610-01 일반회계전출금	일반회계전출금	◦ 법령(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 포함)의 규정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일반자치단체 일반회계로 무상으로 전출하는 자금 ◦ 법령(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 포함)의 규정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국가의 일반회계로 무상으로 전출하는 자금
		610-02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기타특별회계전출금	◦ 법령(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 포함)의 규정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특별회계로 무상으로 전출하는 자금
		610-03 국립학교학생 지원경비	국립학교학생지원경비	◦ 시·도교육청 관할 시도의 전체 학생(국·공·사립)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추진하거나 조성·권장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시도 내에 소재하는 국립유·국립초·국립중·국립고·국립특수학교에 설치한 국립학교회계로 지원하는 경비 - 무상급식 등 시·도 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사업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따라 국립학교로 지원되는 사업 - 감염병 예방 등 시·도 내 전체 학교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업 - 대학수능시험과 같이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험경비 - 당해 시도를 대표하여 전국대회 및 시·도대회에 학생선수로 출전할 경우의 출전비 등 실비변상적 경비 - 국고보조사업, 국가시책사업 등 공·사립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립학교 학생을 지원하도록 한 사업 (※ 관련 법령 등에서 국립학교를 지원하도록 한 사업 등)
			국립학교 자체 사회보장적수혜금	◦ 조례에 의하여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 기반 각종 복지성 수혜금(무상급식, 취약계층 지원 제외)으로 시·도교육청 관할 시도의 전체 학생(국·공·사립)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추진하거나 조성·권장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시도 내에 소재하는 국립유·국립초·국립중·국립고·국립특수학교에 설치한 국립학교회계로 지원하는 경비 (예) 입학준비금, 교육재난지원금, 교복지원금 등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예산편성 시 협의절차 이행여부 확인)

목 그룹	목	세목	원기통계목명	설 정
	620	학교회계전출금		
	620-01	인건비지원	계약제교원인건비지원	◦ 공립학교에 지원하는 교원 대체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및 전임강사,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지원경비
			공무직인건비지원	◦ 공립학교에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인건비 지원 경비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지원	◦ 공립학교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경비
	620-02	학교운영비	학교운영비	◦ 각급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본운영비
	620-03	목적사업비	목적사업비	◦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비[공립 학교에 지원하는 교원 대체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인건비 제외]
			자체 사회보장적수혜금	◦ 조례에 의하여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 기반 각종 복지성 수혜금(무상급식, 취약계층 지원 제외) (예) 입학준비금, 교육재난지원금, 교복지원금 등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예산편성 시 협의절차 이행여부 확인)
	620-04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학교환경개선사업비	◦ 소규모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중 각급학교에서 직접집행 가능한 경비
	620-06	학교특별 교육지원비	학교특별교육지원비	◦ 공립학교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에 대한 지원
	620-07	공립 맞춤형 복지비	공립맞춤형복지비	◦ 공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620-08	인건비재정결함 보조	인건비재정결함보조	◦ 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기타학교에 대한 인건비 재정 결함보조금(교원명예퇴직수당 포함)
	620-09	운영비재정결함 보조	운영비재정결함보조	◦ 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기타학교에 대한 운영비 재정 결함보조금

목 그룹	목	세목	원기통계목명	설 정
	620-10 사립학교목적 사업비	사립학교목적 사업비	사립학교목적사업비	◦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비
			사립학교 자체사회보장적 수혜금	◦ 조례에 의하여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 기반 각종 복지성 수혜금(무상급식, 취약계층 지원 제외) (예) 입학준비금, 교육재난지원금, 교복지원금 등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의 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시·도교 육청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 여야 함.(예산편성 시 협의절차 이행여부 확인)
	620-11 사립학교시설 지원	사립학교시설지원	◦ 시설사업비, 기자재구입비 등 기타사업에 소요되는 자본 형성적 경비 계상 ◦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620-13 사립학교특별 교육지원비	사립학교특별교육비 지원	◦ 사립학교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에 대한 지원	
	620-14 사립학교맞춤형 복지비	사립학교맞춤형복지비	◦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620-15 사립유치원학비 지원	누리과정학비지원	◦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3세~5세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지원하는 학비	
	620-16 사립학교근로자 인건비지원	사립학교근로자 인건비지원	사립학교계약제교원 인건비지원	◦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을 제외한 사립학교 전임강사,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지원 경비
사립학교공무직인건 비지원			◦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을 제외한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사립학교의 상용근로자(학교회계직원) 인건비 지원 경비	
사립학교기간제근로 자인건비지원			◦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을 제외한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사립학교 임시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경비	
700 예비비및기타				
	710 예비비및기타			
	710-01 예비비	일반예비비	◦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예비비(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 ◦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 금액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에 의한 예비비(예비비 편성한도는 없음)		

목 그룹	목	세목	원기통계목명	설 정
		710-02 반환금및기타	국고보조금반환	◦ 교육청이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 미정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광역자치단체보조금반환	◦ 광역자치단체보조금 반환액
			기초자치단체보조금반환	◦ 기초자치단체보조금 반환액
			기타반환금	◦ 기타 반환금
		710-03 내부유보금	내부유보금	◦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 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800 내부거래				
	810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810-01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기금회계에서 인식하는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820 기금전출금			
	820-01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교육청이 설치·운영·관리 하는 기금으로의 전출금	
	830 예탁금			
	830-01 예탁금	예탁금	◦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기금 상호간의 예탁금	
	840 예수금원리금 상환			
	840-01 예수금원금 상환	예수금원금 상환	◦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기금 상호간의 예수금 원금	
	840-02 예수금이자 상환	예수금이자 상환	◦ 예수금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	

※ 원기통계목명은 필요에 따라 추가, 삭제할 수 있다.

별표 5

세입·세출예산의 편제 (제6조 관련)

1. 예산서 편제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 I. 예산총칙
- II. 세입·세출예산
 - 1.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 가. 세입예산 총괄표(관별)
 - 나.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기능별)
 - 다.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조직별)
 - 라.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 2. 세입예산서(장·관·항·목별)
 - 3. 세출예산서(정책·단위·세부사업별)
- III. 계속비사업 조서
- IV. 채무부담행위 조서
- V. 명시이월사업 조서

제2권. 첨부서류

1. 재정운용 상황 개요서

- 1) 지방교육재정 현황
-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 가. 재정자주도
 - 나.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 다.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표
 - 다-1. 예비비 확보율
 - 다-2. 기금전출금 비율
- 3) 부채
 - 가. 부채 총괄
 - 나. 통합부채의 내역
 - 다. 우발부채의 내역
 - 다-1.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다-2. 채무부담행위
 - 다-3.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 다-4. 소송사건
-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 가. 의무지출, 재량지출의 비중
 - 나. 의무지출 내역
-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사항 및 인센티브 현황
-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가.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 가-1. 지방채 발행사업 총괄
 - 가-2.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 나. 민간투자사업 현황
 - 나-1. 민간투자사업 총괄
 - 나-2.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6. 성인지 예산서
7. 성과계획서
8.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9. 명시이월 명세서
10.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
11. 공유재산 관련서류
12.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3.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14.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15.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1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17.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
18.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19.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2. 예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예산의 절사와 절상
 - 세입은 1,000원 미만을 절사하고
 -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함
- 예산의 단위
 - 세입·세출 예산서에 표기하는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함
- 계량단위
 -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에 의함

3. 예산서 서식

- 1-1. 표지 및 예산총칙
- 1-2. 세입예산 총괄표(관별)
- 1-3.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 1-4.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 1-5.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 1-6. 세입예산서(장·관·항·목별)
- 1-7. 세출예산서(정책·단위·세부사업별)
- 1-8. 계속비사업 조서
- 1-9. 채무부담행위 조서
- 1-10. 명사이월사업 조서
- 1-11. 지방채 조서
- 1-12.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 1-13. 재정운용 상황 개요서
- 1-14. 성인지 예산서

» 서식 1-1

〇〇년도

〇〇〇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서

〇〇〇시·(도)교육청

예 산 총 칙 (예시)

제1조 ○○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천원으로 한다.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2조 ○○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3조 ○○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제4조 ○○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5조 ○○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천원으로 한다

제6조 ○○년도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천원으로 한다.

제7조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제8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2. 기간제근로자, 교육공무직 및 계약직교원 보수
3.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4. 재해대책비
5. 반환금
6. 학교신설비

제9조 ①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③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시·도의회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 서식 1-2 세입예산 총괄표(관별)

세입예산 총괄표(관별)

회계연도 :

예산구분 :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		%		%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		%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		%
	기타이전수입		%		%		%
	소계		%		%		%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		%		%
	행정활동수입		%		%		%
	자산수입		%		%		%
	이자수입		%		%		%
	금융자산회수		%		%		%
	기타수입		%		%		%
	소계		%		%		%
차 입	지방채		%		%		%
	소계		%		%		%
기 타	전년도이월금		%		%		%
	예치금회수		%		%		%
	금융자산회수		%		%		%
	소계		%		%		%
내부거래	전입금		%		%		%
	예탁금및예수금		%		%		%
	소계		%		%		%

» 서식 1-3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회계연도 :

예산구분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		%		%
1. 유아및초중등교육		%		%		%
가. 인적자원운용		%		%		%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		%		%
다. 교육복지		%		%		%
라. 보건급식		%		%		%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		%		%
바. 학교교육여건개선		%		%		%
2. 평생교육		%		%		%
가. 평생교육		%		%		%
3. 교육일반		%		%		%
가. 교육행정일반		%		%		%
나. 기관운영		%		%		%
다. 재무활동		%		%		%
4. 예비비		%		%		%
가. 예비비및기타		%		%		%
5. 인건비		%		%		%
가. 인건비		%		%		%

» 서식 1-4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회계연도 :

예산구분 :

(단위 : 천원)

기관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		%		%
본 청		%		%		%
공보담당관실		%		%		%
○○담당관실		%		%		%
○○국 ○○과		%		%		%
○○국 ○○과		%		%		%
○○국 ○○과		%		%		%
직속기관		%		%		%
○○○연수원		%		%		%
○○○도서관		%		%		%
교육지원청		%		%		%
○○교육지원청		%		%		%
○○교육지원청		%		%		%

서식 1-6 세입예산서(장·관·항·목별)

장	이전수입
---	------

10000

(예산구분) ○○년 본예산

예산액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관	항 목	①	②	③=①-②	③/②
	합계				%
	중앙정부이전수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보통교부금				%
	특별교부금				%
	증액교부금				%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
	특별회계전입금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				%
	지방교육세전입금				%
	담배소비세전입금				%
	시도세전입금				%
	학교용지매입시도부담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
	교육급여보조금				%
	무상교육경비전입금				%
	비법정이전수입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
	기초자치단체전입금				%
	국고지원전입금				%
	기타지방교육세전입금				%
	기타이전수입				%
	민간이전수입				%
	기부금				%
	기타지원금				%
	기타협력사업비				%
	자치단체간이전수입				%
	전입금				%

관	중앙정부이전수입
----------	-----------------

11000

(예산구분) ○○년 본예산

(장)이전수입

예산액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항	목				
합 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보통교부금				%
	특별교부금				%
	증액교부금				%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
특별회계전입금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

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

11100

(예산구분) ○○년 본예산	(장)이전수입	(관) 중앙정부이전수입
----------------	---------	--------------

□ 예산액

(단위 : 천원)

목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합 계				%
보통교부금				%
특별교부금				%
증액교부금				%

목	보통교부금
----------	--------------

(예산구분) ○○년 본예산	(장) 이전수입	(관) 중앙정부이전수입
(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목) 보통교부금	(소관)

□ 예산액

(단위 : 천원)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

(장)이전수입 (관)중앙정부이전수입 (항)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목)보통교부금 (단위: 천원)

사업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금액		

※ 장·관·항·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

※ 예산서 상에 표시되는 산출기초의 출력여부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선택 가능

» 서식 1-7 세출예산서(정책·단위·세부사업별)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

051 - 01

(예산구분) ○○년도 본예산	(분야) 교육	(부문) 유아및초중등교육
-----------------	---------	---------------

□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합 계				%
교직원역량강화				%
교직원인사				%
교직원복지				%

□ 경비성질별 내역

(단위 : 천원)

성질별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합 계				%
인건비				%
물건비				%
이전지출				%
자본지출				%
상환지출				%
전출금등				%
예비비및기타				%
내부거래				%

단위사업	교직원역량강화
-------------	----------------

01 - 03

(예산구분) ○○년도 본예산	(부문) 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
-----------------	---------------	---------------

□ 세부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소관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합 계					%
교원연수운영	계				%
	○○과				%
지방공무원연수운영	계				%
	○○과				%
근로자연수운영	계				%
	○○과				%

세부사업

교원연수운영

01 - 03 - 01

(예산구분) ○○년도 본예산	(기능) 교육 - 유아및초중등교육	(소관) ○○과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 교직원역량강화	

□ 예산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

재원내역

일반재원	국고보조금				

(정책)인적자원운용 (단위)교직원역량강화 (세부)교원연수운영

(단위 : 천원)

사업내역	목	예산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금액		

※ 예산서 상에 표시되는 산출기초의 출력여부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선택 가능

» 서식 1-8 계속비사업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단위 : 천원)

기관 (부서)명	과목			사업명	사업비 총액	전전년도 이전			전 년 도			계 획 액			비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예산액	지출액	지출 잔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 잔액	당해 년도	○○ 년도	○○ 년도	

※ 사업개요 추가 작성·계획연도 추가 및 총사업비 변경·연도별 계획액 변경·변경사유 등 계속비 변경 사항(기정·변경·증감)에 대한 표시는 시·도교육청 자율 표시

» 서식 1-9 채무부담행위 조서

채무부담행위 조서

(단위 : 천원)

과 목			사업명	채무부담 행 위 액	상 환 계 획				사 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년	○○년	○○년	○○년	

» 서식 1-10 명시이월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단위 : 천원)

기관 (부서)명	과 목				사 업 명	예산액	명시이월액	사 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 서식 1-11 지방채 조서

지방채 조서

(단위 : 천원)

구분	기 간		이 율	기 채 선	기 채 액 (A)	기 상 환 액 (B)	전 년 도 상 환						당해연도상환			금후 상환 계획액 (E)	기채 사유
	기채 년도	상환 완료 예정 년도					상환계획			상 환 액			계 획 액				
							원금	이자	계	원금 (C)	이자	계	원금 (D)	이자	계		

- 구분 : 금융기관채, 지방채증권, 기타 차입금, 국외차입금 등
- 기채액(A)=기상환액(B)+전년도 상환액(C)+당해연도 상환계획액(D)+금후 상환계획액(E)

» 서식 1-12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단위 : 천원)

과 목			사업명	총사업비	상환기간		기상환액	상환 예정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시작	완료		Y년	Y+1년	Y+2년	Y+3년	Y+4년 이후	

- 총사업비 : BTL 임대료를 말하며, 운영비는 제외
- Y년 : 당해연도

» 서식 1-13 재정운용 상황 개요서

재정운용 상황 개요서

1. 지방교육재정 현황

- 당해연도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표시

2. 교육부령이 정하는 재정지표

가. 재정자주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Y년	Y-1년	증감
재정자주도 $((B+C+D)/A \times 100)$			
세입예산총액(A)			
지방교육재정교부금(B)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C) (목적성경비 제외)			
자체수입(D)			

【작성기준】

- Y년은 당해연도, Y-1년은 전년도
- 세입예산총액 : 본예산액 기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세입 목 보통교부금(11101), 특별교부금(11102), 증액교부금(11103)
-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 세입 목 지방교육세전입금(12101), 담배소비세전입금(12102), 시도세전입금(121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12105), 단, 목적성경비 제외
 - ※ 목적성 경비 제외 내역 :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12104), 교육급여보조금(12106), 무상교육경비전입금(12107)
- 자체수입 : 자체수입(20000) (단,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27204), 보조금등반납금수입(27205)는 제외), 기타이전수입(16000)

나.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Y년(A)	비율	Y-1년(B)	비율	증감	비율(C/B)
					(C=A-B)	
세출예산총액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기본경비						

【작성기준】

- Y년은 당해연도, Y-1년은 전년도
- 세출예산총액 : 본예산액 기준
-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경비 + 기본경비
 - 인력운영경비: 아래의 경비를 모두 합한 금액
 - 공무원인건비 및 근로자인건비 단위사업내 인건비(110), 공무원법정부담금(32003),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32005), 공무원법정부담금(32012), 계약직교원법정부담금(32013), 인건비지원(62001)
 -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세부사업 내 인건비재정결함보조(62008), 사립학교근로자인건비지원(62016)
 - 모든 단위사업의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24003), 교원연구비(24004)
 - 기본경비 : 아래의 경비를 모두 합한 금액
 - 공무원인건비 및 근로자인건비 내 맞춤형복지비(24002), 공립맞춤형복지비(62007), 사립맞춤형복지비(62014)
 - 기본운영비 단위사업
 - 학교운영비지원 세부사업의 학교운영비(62002)
 -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세부사업의 운영비재정결함보조(62009)
 -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세부사업의 맞춤형복지비(24002), 사립맞춤형복지비(62014)

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다-1. 예비비 확보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비비 예산액 (A)	세출예산 총액 (B)	예비비 확보율 (A/B*100)	비고
일반 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작성기준】

- 예비비 예산액 및 세출예산 총액: 본예산액 기준
- 일반예비비: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위하여 편성한 예비비 비율(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산에 계상)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방재정법」제43조제2항에 따라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별도로 편성한 예비비 비율(예비비 편성한도 없음)

다-2. 기금전출금 비율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기금전출금 예산액 (A)	세출예산 총액 (B)	기금전출금 비율 (A/B*100)	전출 근거
A〇〇기금				〇〇법 〇조
B〇〇기금				〇〇조례 〇조
C〇〇기금				〇〇조례 〇조
계		세출예산 총액		

【작성기준】

- 기금전출금 예산액 및 세출예산 총액: 본예산액 기준
- 기금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도교육청(교육감)이 설치한 각종 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

3. 부채

가. 부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Y-2년	비율 (B/A)	Y-3년	비율 (B/A)	증감 (다=가-나)	비율 (다/나)
	(가)		(나)			
세입결산 총액(A)						
부채 계(B=C+D)						
통합부채(C)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우발부채(D)						
지급보증						
채무부담행위						
계약상 약정						
소송사건						

【작성기준】

- Y-2년은 전전년도, Y-3년은 Y-2년의 직전연도 결산기준
- 유동부채 :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예수금,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미지급비용, 등록금선수금, 선수금, 선수수익,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의 유동부채(세외예수금)
- 장기차입부채 :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장기차입금, 지방채, 민자리스부채, 금융리스부채
-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한 부채로서 장기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미지급비용, 장기선수수익, 장기선수금, 장기세외예수금(임대보증금)
- 우발부채 :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확정될 손실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부채로 진행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되며 재정상태보고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반영

나. 통합부채의 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내 역	금 액	비 고
통합부채 계(D=A+B+C)			
유동부채(A)			
장기차입부채(B)			
기타비유동부채(C)			

【작성기준】

- 전전년도(Y-2년) 결산기준
- 과목 : 발생주의 복식부회계 계정과목 3레벨 수준(예 : 미지급금, 선수금)

다. 우발부채의 내역

다-1.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 백만원)

연번	발생연도	행위명(행위내용)	제공받은자	보증채무액	부채계상액	채권자
계						

【작성기준】

- 전전년도(Y-2년) 결산기준

다-2. 채무부담행위

(단위 : 백만원)

연번	발생연도	행위명(행위내용)	제공받은자	채무부담 행위금액	부채계상액
계					

【작성기준】

- 전전년도(Y-2년) 결산기준

다-3.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 백만원)

연번	발생연도	행위명(약정내용)	계약상대자	약정금액	부채계상액
계					

【작성기준】

- 전전년도(Y-2년) 결산기준
-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등의 약정내용이 있는 경우에 반영

다-4. 소송사건

(단위 : 백만원)

유형	건수	소송가액	소송충당 부채계상금액	비고
계				

【작성기준】

- 전전년도(Y-2년) 결산기준
- 유형 : 처분취소, 손해배상, 지위확인, 반환청구, 대금청구, 소유권이전등기, 기타소송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가. 의무지출, 재량지출의 비중

(단위 : 백만원, %)

구 분	Y년(A)	비중	Y-1년(B)	비중	증감	
					(C=A-B)	비율(C/B)
세출총액						
의무지출						
재량지출						

【작성기준】

- Y년은 당해연도, Y-1년은 전년도 본예산액 기준
- 의무지출 :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국고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 재량지출 : 의무지출 외의 지출

나. 의무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내 역	금 액	관련 근거	비 고
합 계			
△△△사업			
○○○사업			
...			

【작성기준】

- 당해연도 본예산액 기준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목(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작성기준】

- 전년도 10.1부터 당해연도 9.30까지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교육부 등 중앙부처
-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예시)

(단위 : 백만원)

구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교부금액
감액	법령위반 과다 지출 및 징수 태만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에 따른 교육재정 1,000백만원 손실 초래	△1,000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이·불용률)	00년 이·불용률 목표치 미달성 ※ 목표치 2퍼센트 포인트 초과	△10,000
증액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00년 상반기 예산집행 우수교육청 선정	10,000

【작성기준】

- 전년도 10.1부터 당해연도 9.30까지 확정된 교부금 대상(보통교부금 확정교부자료 참고)
- 감액 : 지방재정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거나 의무지출을 게을리 한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별표3]측정항목 7(재정집행 효율화 지원)에 의한 교부금이 감액된 경우 등 보통교부금 산정 교부시 감액된 내용으로 작성(보통교부금 확정교부자료 참고) 등
- 증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별표3]측정항목 7(재정집행 효율화 지원)에 의한 교부금이 증액된 경우(보통교부금 확정교부자료 참고)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 분석을 실시하여 매년 10월경(예산안 제출 전) 공문으로 통보하는 결과 서식 첨부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가-1. 지방채 발행사업 총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지방채		특별 교부금	국고 보조금	지방 보조금	자체 재원	
		교부금 부담	자체 부담					

【작성기준】

- 작성일 현재기준, 원금만 작성
- 교부금부담 : 교육부에서 승인한 지방채
- 자체부담 : 교육청이 자체 발행한 지방채
- 총사업비 = 지방채+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자체재원
-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의 작성요령은 투자심사사업에 준하며, 재원에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액 및 발행예정액을 필히 기재

가-2.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학교신설사업 : 학교별(○○초)로 작성
 - 환경개선사업 : 단위사업별(예 : ○○초 외 10개교 창호교체사업)로 작성

※ 작성서식 예시

사업명		담당자	000과 홍길동(☎000-0000)		
<input type="checkbox"/> 사업목적 및 필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사업개요 <input type="radio"/> 기 간 : <input type="radio"/> 위 치 : <input type="radio"/> 규 모 :					
<input type="checkbox"/>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input type="radio"/> 총사업비 : 백만원 <div style="text-align: right;">(단위: 백만원)</div>					
		집행액		향후 소요액	
구분		계		Y-2년도까지	Y-1년도
계					
지방채	교부금부담				
	자체부담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 집행액: 지방채 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 발행예정액 포함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input type="radio"/>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					

나. 민간투자사업 현황

나-1. 민간투자사업 총괄

(단위: 백만원)

사업명	민 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전년도까지 (Y-1까지)	당해연도 (Y)	향후예정액 (Y+1이후)	

【작성기준】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BTL) 심의 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 전년도까지는 BTL임대료 등의 집행액(결산기준), 당해연도 이후는 추정액

나-2.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작성서식 예시)

사업명				담당자	000과 홍길동(☎000-0000)
<input type="checkbox"/> 사업목적 및 필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사업개요 <input type="radio"/> 기간 : <input type="radio"/> 위치 : <input type="radio"/> 민간사업자 : <input type="radio"/> 총사업비 : <input type="radio"/> 사업규모 :					
<input type="checkbox"/> 재정부담 현황 <input type="radio"/> 계약조건(최소수익보장 내역, 기간 등) <input type="radio"/>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div style="text-align: right;">(단위: 백만원)</div>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구 분	계	Y-2년까지	Y-1년도	Y년도	Y+1년도 이후
계					
지방채					
자체재원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추진단계(운영중, 시공중, 시공준비중 중 택1)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input type="radio"/>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계약조건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					

나. 성인지 예산 개요

〈 성인지 예산서 개요 〉

1. 성인지 예산의 의의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 ‘00년 성인지 예산은 각 기관별로 작성한 성인지 예산을 취합·보완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임

2. ‘00년 성인지 예산 개요

- ‘00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총 00개 기관의 00개 사업이며, 대상사업의 예산규모는 000천원 수준임

구분	대상사업	비고
필수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⁶⁾ 에 포함된 사업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 성별영향평가 사업 ⁷⁾	최근 3년간 교육청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한 사업
	· 매년 교육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기준」에 포함 통보
선택	· 시·도교육청이 자체선정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교육감 공약사업 등

- ‘00년 성인지 예산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시·교육청별 특성에 맞게 수록)
 - ‘00년 성별영향평가 중점과제인 학교폭력예방교육 사업을 반영하여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 ‘00년 시·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과제 총 3개 과제 중 1개 과제를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기반 마련
 - 사업별 성과목표 설정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둠

3. 성인지 예산서 성격 :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예산서 첨부서류)

6)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의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정책 과제 반영
 7)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8.03.27.개정 ‘18.09.28.시행)으로 명칭 변경(성별영향분석평가→성별영향평가)

다. 성인지 예산 총괄표

I. 성 평등 목표

○

II. ○○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

○
-

III. 성인지 예산의 규모와 분야별 규모

□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사업분류	사업개수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 증감	
				(A-B)	증감률
합 계	개				%
1.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개				%
2. 성별영향평가사업*	개				%
3. 교육부지정사업	개				%
4. 자체선정사업**	개				%

* 시·도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반영

**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

□ 정책분야·정책과제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정책분야·정책과제명	사업분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1	2	3	4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		%		%
1.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		%		%
1-1. 양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						%		%		%
...						%		%		%
2.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		%		%
2-1. 아동 돌봄 지원 강화						%		%		%
...						%		%		%
3.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		%		%
3-1. 피해자의 법·제도적 권리 보장						%		%		%
...						%		%		%
4.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		%		%
4-1. 양성평등한 성장 환경 조성						%		%		%
...						%		%		%
5.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		%		%
5-1. 정책 연계-협력체계 강화						%		%		%
...						%		%		%

※ 사업분류 : "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성별영향평가사업, "3" 교육부지정사업, "4" 자체선정사업

□ 부문·정책사업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개, 천원)

부문·정책사업	사업분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1	2	3	4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		%		%
1. 유아및초중등교육						%		%		%
가. 인적자원운용						%		%		%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		%		%
다. 교육복지						%		%		%
라. 보건의급식						%		%		%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		%		%
바. 학교시설여건개선						%		%		%
2. 평생교육						%		%		%
가. 평생교육						%		%		%
3. 교육일반						%		%		%
가. 교육행정일반						%		%		%
나. 기관운영						%		%		%
다. 재무활동						%		%		%
4. 예비비						%		%		%
가. 예비비및기타						%		%		%
5. 인건비						%		%		%
가. 인건비						%		%		%

※ 사업분류 : “1”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성별영향평가사업, “3”교육부지정사업, “4”자체선정사업

□ 기관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개, 천원)

기관명	사업분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1	2	3	4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		%		%
본 청						%		%		%
						%		%		%
						%		%		%
						%		%		%
						%		%		%
직속기관						%		%		%
						%		%		%
						%		%		%
						%		%		%
교육지원청						%		%		%
						%		%		%
						%		%		%

※ 사업분류 : “1”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성별영향평가사업, “3”교육부지정사업, “4”자체선정사업

라. 정책과제별 성인지 사업 예산 현황

【정책분야 : 】

정책과제명					
<input type="checkbox"/> ○○년도 성 평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input type="checkbox"/> 대상사업의 세부사업별 현황 (단위 : 천원)					
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	사업명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합 계					%
부문					%
정책사업1					%
단위사업1					%
세부사업1					%
	사업1				%
	사업2				%
세부사업2					%
	사업1				%
					%
					%
<input type="checkbox"/> 기관별 성별수혜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합 계					%
본 청					%
					%
					%
					%
					%
직속기관					%
					%
					%
교육지원청					%
					%
					%

마. 기관별 성인지 예산서

기 관 명(○ ○실·과)

I. ○○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

○

II. 성인지 예산의 규모

□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사업분류	사업개수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 증감	
				(A-B)	증감률
합 계	개				%
1.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개				%
2. 성별영향평가사업*	개				%
3. 교육부지정사업	개				%
4. 자체선정사업**	개				%

* 시·도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반영

**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

□ 정책분야·정책과제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정책분야·정책과제명	사업분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1	2	3	4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	%		%		
1.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	%		%		
1-1. 양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					%	%		%		
...					%	%		%		
2.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	%		%		
2-1. 아동 돌봄 지원 강화					%	%		%		
...					%	%		%		
3.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	%		%		
3-1. 피해자의 법·제도적 권리 보장					%	%		%		
...					%	%		%		
4.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	%		%		
4-1. 양성평등한 성장 환경 조성					%	%		%		
...					%	%		%		
5.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	%		%		
5-1. 정책 연계-협력체계 강화					%	%		%		
...					%	%		%		

※ 사업분류 : "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성별영향평가사업, "3" 교육부지정사업, "4" 자체선정사업

□ 부문·정책사업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개, 천원)

부문·정책사업	사업분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1	2	3	4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		%		%
1. 유아및초중등교육						%		%		%
가. 인적자원운용						%		%		%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		%		%
다. 교육복지						%		%		%
라. 보건급식						%		%		%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		%		%
바. 학교시설여건개선						%		%		%
2. 평생교육						%		%		%
가. 평생교육						%		%		%
3. 교육일반						%		%		%
가. 교육행정일반						%		%		%
나. 기관운영						%		%		%
다. 재무활동						%		%		%
4. 예비비						%		%		%
가. 예비비및기타						%		%		%
5. 인건비						%		%		%
가. 인건비						%		%		%

※ 사업분류 : “1”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성별영향평가사업, “3”교육부지정사업, “4”자체선정사업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구분			Y-3년도	Y-2년도	Y-1년도
합계	전체	사업대상자(A)	명	명	명
		사업수혜자(B)	명	명	명
		수혜율(B/A)	%	%	%
	여성	사업대상자(C)	명	명	명
		사업수혜자(D)	명	명	명
		수혜율(D/C)	%	%	%
	남성	사업대상자(E)	명	명	명
		사업수혜자(F)	명	명	명
		수혜율(F/E)	%	%	%
○○과	전체	사업대상자(A)	명	명	명
		사업수혜자(B)	명	명	명
		수혜율(B/A)	%	%	%
	여성	사업대상자(C)	명	명	명
		사업수혜자(D)	명	명	명
		수혜율(D/C)	%	%	%
	남성	사업대상자(E)	명	명	명
		사업수혜자(F)	명	명	명
		수혜율(F/E)	%	%	%
...		명	명	명	

※ 통계출처 : 교육통계연보 자료 활용

※ 사업대상자는 시설물의 경우 동 사업(시설물 등)의 수혜지역 총 인원수 등을 기재하고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은 “불특정 다수” 등으로 기재

※ Y-3~Y-2년은 집행실적, Y-1년은 집행실적 및 집행기준에 의한 추정치, Y년은 추정치

○ 예산 구분

(단위 : 천원)

구분		Y-3년 결산액	Y-2년 결산액	Y-1년 예산액
합계	계			
	여성(비율) (D/B)	(%)	(%)	(%)
	남성(비율) (F/B)	(%)	(%)	(%)
○○과	계			
	여성(비율) (D/B)	(%)	(%)	(%)
	남성(비율) (F/B)	(%)	(%)	(%)
...	계			
	여성(비율) (D/B)	(%)	(%)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

※ 성별 수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편차를 가져온 제도상의 원인, 현실적 여건,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성과달성 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구 분	Y-2년 실적	Y-1년 추정치	Y년 목표치
전 체			
○○과			
○○과			
...			

※ 부서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

- 산출근거 :

성평등 기대효과

-
-

※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성평등 효과를 기재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구분		Y-3년	Y-2년	Y-1년
전체	사업대상자(A)	명	명	명
	사업수혜자(B)	명	명	명
	수혜율(B/A)	%	%	%
여성	사업대상자(C)	명	명	명
	사업수혜자(D)	명	명	명
	수혜율(D/C)	%	%	%
남성	사업대상자(E)	명	명	명
	사업수혜자(F)	명	명	명
	수혜율(F/E)	%	%	%

※ 통계출처 : 교육통계연보 자료 활용

※ 사업대상자는 시설물의 경우 동 사업(시설물 등)의 수혜지역 총 인원수 등을 기재하고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은 “불특정 다수” 등으로 기재

※ Y-3~Y-2년은 집행실적, Y-1년은 집행실적 및 집행기준에 의한 추정치, Y년은 추정치

- 예산 구분

(단위 : 천원)

구분	Y-3년 결산액	Y-2년 결산액	Y-1년 예산액
계			
여성(비율) (D/B)	(%)	(%)	(%)
남성(비율) (F/B)	(%)	(%)	(%)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

※ 성별 수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편차를 가져온 제도상의 원인, 현실적 여건,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성과목표

성과목표(성과지표)	Y-2년 실적	Y-1년 추정치	Y년 목표치

※ 부서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

- 산출근거 :

□ 성평등 기대효과

-
-

※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성평등 효과를 기재

